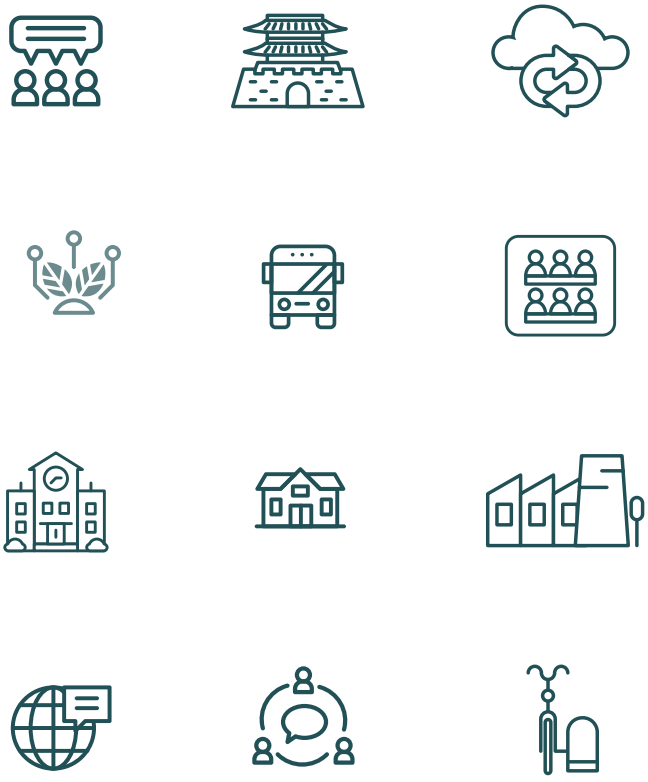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4-제9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 1

2.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 5

3.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강화 (관계부처합동) ····· 10

4.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1차 선정 결과 (교육부) ····· 17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 (경기도) ····· 25

2. 아이(8~18세) 꿈 수당 사업 시행 (인천광역시) ····· 30

3. 2025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 (광주광역시) ····· 34

4.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 39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KDI) ····· 49

2.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 57

3. 인공지능시대, 혁신과 규제의 AI 입법례 (국회도서관) ····· 60

4. AI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 (국회미래연구원) ····· 65

5.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연구(전북연구원) ····· 73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연례적 이·전용 사업 분석(기획재정위원회) ····· 79

2.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관리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 85

3. 발효식품 관련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 철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92

4. 청소년비즈쿨 사업의 참여 제고 등 개선 필요(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95

5.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이용권 사용에 필요한 결제 수단 다양화 검토 필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00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른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고자 '농촌 이동장터' 사업 추진 발표('24.07.)

1 추진배경

○ **농촌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생필품 구입 및 배달 등 필수서비스 지원** 필요성 대두

○ 농협과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농촌마을까지 생필품 구입 지원 등 생활서비스 지원 실행 방안 협의**

* 113개 농촌지역 대상 의견조회 후 관심 지자체 **18개** 시·군 발굴('24.5월)

2 주요내용

○ 생필품(가공식품·식료품·농산물 등)을 실은 **개조 트럭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생필품 구입 지원**하는 판매 서비스 제공 ('24년 下 실시)

* (국내사례) 포천 소흘농협, 영광 여민동락공동체(조합) / (국외사례) 일본 도쿠시마루현



[포천시 소흘농협 찾아가는 행복장터]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이동점빵]

○ 지역별 여건에 따라, ①**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마트 이동지원** 및 ②생필품 배달 외 **생활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 유형 다양화

○ **시·군과 지역농협(하나로마트) 등 민간과 협업**을 통한 **시범운영**, 추후 **취약지역 중심으로 단계적 사업 확대** ①**농식품부**(차량구입·기자재 지원), ②**지자체**(차량운영비·전담인력 지원), ③**지역농협**(보조인력 지원 및 생필품 판매)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3 기대효과

○ '이동마트' 확대로 생필품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증대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 제공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이 **협업**하여 **'식품사막화 문제 해소'** 기여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전국적으로 3만 7,563개 행정리 중 2만 7,609곳(약 73.5%)에는 식료품 소매점이 없고, 소매점이 없는 마을 비율이 90%를 넘는 시군 단위 지자체는 6곳으로 확인됨 ('20년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 전국 시·도 중 전북자치도는 전체 행정리 중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의 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83.3%), 세종(81.6%), 경북(78.9%)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 **전북자치도 농촌의 '식품사막화' 현상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읍시의 경우 93.3%가 소매점이 없어** 생활의 불편함이 가속되고 있음

<식품사막이 심각한 상위 시·군 지자체>

순위	지자체	행정리(A)	소매점이 없는 마을(B)	소매점이 없는 마을의 비율 (B/A)
1	전북 정읍	555	518	93.3%
2	전남 영광	292	269	92.1%
3	대구 군위	180	165	91.7%
4	전남 순천	405	371	91.6%
5	충남 청양	181	165	91.2%
6	충남 계룡	72	65	90.3%
7	전북 진안	315	283	89.8%
8	경남 의령	238	212	89.1%
9	경북 문경	216	192	88.9%
10	충북 괴산	279	247	88.5%

<출처: 농민신문 '농촌 식품사막' ('24.05.10)>

○ 전북연구원에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전체 행정리 중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의 비율이 높은 시·군은 **정읍 93.3%, 진안 89.8%, 남원 87.8%, 장수 87.4% 등 순**이었고, 도내 거주지에서 식료품 소매점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마을은 7곳, 군산시가 6곳, 완주군이 1곳으로 나타남

○ 이러한 농촌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경우 2010년부터 민간조직 **'여민동락공동체' 주도**로 생필품과 농산물 등을 트럭에 실어 매주 2회씩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배달 및 판매하는 **이동장터**를 운영함

○ **경기 포천 소흘농협**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장터'** 운영을 통해, 생필품 판매뿐만 아니라 주민과 말벗이 되는 소통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음.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얻고 있음[1)]

○ 전북자치도 **김제시**에서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찾아가는 이동점빵'** 사업을 문화행사와 접목해 시범 운영하고 있음

○ 이동장터 운영사례 확산으로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동장터로만 그치지 않고, 복지·돌봄 등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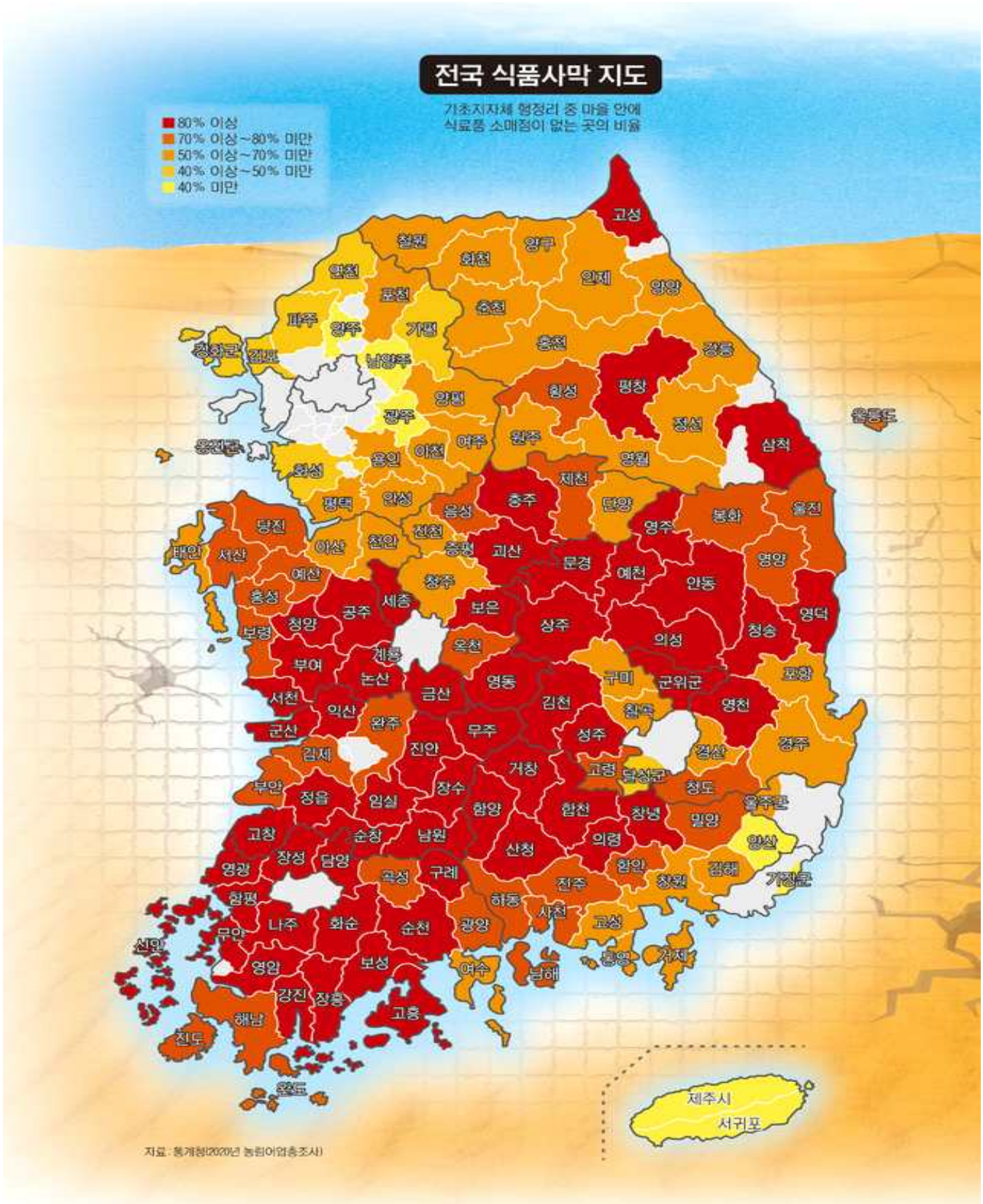
○ 물론 이동장터는 농촌 식품 사막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농촌 주민의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위협하는 **식품사막화 심각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적은 실정**으로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하여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대안이 필요함

○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전북자치도 행정리의 식료품 소매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식품사막 지도 제작·관리**가 요구됨[2)]

1) 식품사막 건너는 희망 '찾아가는 행복장터' (충북일보 '24.09.10)

2) 농촌지역 '식품사막화'의 의미와 과제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24.09.04)

참고 전국 식품사막 지도 (2020 농림어업총조사)



2.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9.12., 경제관계장관회의)
◇ **주거, 이동** (모빌리티)**서비스 등 일상생활 밀접 분야 중심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 방안 마련**
◇ **ICT기술 발전 등에 따른 생활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개선 → 소비자 만족도 제고**

1 관계규정

○ **주거서비스 개선**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 고시)

○ **고령자서비스 개선** : 「응급의료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모빌리티서비스 개선** : 「여객자동차법」, 「도로교통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국토부 고시)

2 중점사항

○ 생활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

○ 新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이용자 불편 해소 위한 **제도개선**

3 주요내용

구 분	주요 추진과제
① 주거서비스	▸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 / 내실화
② 고령자서비스	▸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확대 ▸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 공공주택 內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신설
③ 모빌리티서비스	▸ **차량대여 서비스 개선** - 렌터카 대여 계약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 - 주요 기차역 內 렌터카 공동 영업소 시범운영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세부 추진과제 / 전북 추진 필요사항

□ 주거 서비스

①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

- 입주예정자 본인,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방문주체 명확히 규정, 분쟁 예방
  * 주택법령 개정안 마련('24.下, 국토부)
- 하자점검 관련 기술자격, 점검장비 등을 조사하여 안내
- **(전북 추진 필요사항)** (개정 법령 시행 이후)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계획』內 하자점검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검토 : 하자점검 대행 관련 사항 포함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24.下, 국토부 고시 개정)
- 하자 조사방법, 보수비 산정기준 등 진단과 보수 청구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
- **(전북 추진 필요사항)** (개정 고시 시행 이후)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內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개정 검토

→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 및 이후 절차 진행을 위한 지자체 지원사항 포함

③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

-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전국 확대(~'25), 소음측정 예약시스템 도입('24.下)
- **(전북 추진 필요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검토

→ 심의위원 구성에 도내 심리상담사 포함여부 검토(지자체 차원 심리상담 추가지원 차원)

㉯ '층간소음 상담실' 신설 운영을 위한 사항 검토

* 현재 서울, 광명, 청주, 광주, 인천 부평구 운영中

④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

- 공사사례 분석, 의견 수렴 등 통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24.下, 시행규칙 개정)
-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항목 추가, 공사항목 등 현실화
- **(전북 추진 필요사항)**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 도내 공동주택의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항목 리스트 최신화/공개

㉯ 도지사의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시 개선 수립기준 포함(교육 수탁기관 안내)

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내실화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배포('24.下)
- 지자체의 장기수선계획 검증 내실화 위해 현행 15일인 검토기간 연장 등 검토
- **(전북 추진 필요사항)** (개정 가이드라인 배포 및 장기수선계획 검토기간 연장 시행 이후)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검토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표준화,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절차 도입
→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인계 全주기 검토·자문으로 자문단 역할 확대/구체화
→ 관리주체에 최초 장기수선계획서 인계, 정기·수시조정에 활용토록 지원

□ 고령자 서비스

①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확대

- 가격정보 공개 대상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 마련 (~'25.下, 복지부)
- **(전북 추진 필요사항)** [산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개정 시행 이후]

㉮ 장사시설 미보유 업체의 장례 서비스 가격 표시현황 조사

* 현재 장사시설 보유 업체는 서비스 가격 표시의무가 있으나, 미보유 업체는 이러한 의무가 없음

㉯ (제도 시행 이후) 규정 미준수 업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개

②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종사자 자격 안내('24.下, 복지부)
  - (모든 종사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상담 및 혈압관리 등) 제공 가능
  - (의료인) 「응급의료법」 소정범위 內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등) 제공 가능
- **(전북 추진 필요사항)** (개정 가이드라인 배포 및 장기수선계획 검토기간 연장 시행 이후)

㉮ 도내 노인복지주택 거주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안내
㉯ 종사자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 교육 시행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영리화 문제 발생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③ 공공주택 內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신설

- 비장애 고령자 입주시 주거약자 편의시설 선택 가능토록 시설 설치기준 마련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4.下, 국토부)
- **(전북 추진 필요사항)** (국토부 지침 개정 시행 이전~이후)

㉮ 고령자 입주시 주거약자 편의시설 제공현황 및 설치 신청절차 등 실태 파악
㉯ 비장애 고령자의 편의시설 (좌식 샤워시설 등)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등 제반사항 준비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內 포함

□ 모빌리티 서비스

① 렌터카 대여 계약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

- 렌터카 계약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 마련('24.下, 국토부)

② 편도 렌터카 활성화를 위한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

- 렌터카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 검토('24.下~, 국토부)
- 현행 영업소 기준의 타당성 및 지역별 렌터카 이용량 분석, 의견수렴 등 추진

③ 중소 렌터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운수협정 활성화

- 업체간 영업소와 정비망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수협정 활성화, 중소업체 서비스 품질 제고
- 공동운수협정의 내용을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 신고, 신고범위 내 타 업체의 영업소·차고지 사용 허용

④ 주요 기차역 內 렌터카 공동 영업소 시범운영

-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 운영
- 지역 중소렌터카협동조합이 철도공사와 영업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분담 및 영업 방식 등에 합의한 참여기업에 영업 공간 제공

⑤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

-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기술 표준안 마련을 통해 운송사별 상호 호환성 강화
-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24.下~), 업체간 인식률 개선 등 기술 고도화 논의

⑥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기준 완화

-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크기 기준 충족시 고급 택시면허 취득 허용('24.下, 국토부 고시 개정)

⑦ 공항·기차역 內 지역 인기제품의 팝업스토어 입주 편의 개선

- 공항·기차역 內 중기·소상공인의 팝업스토어 임대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계약특례 부여(공정성 및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범위)
-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물, 음식 등 최신 유행상품을 기차역과 공항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북 추진 필요사항)**

㉮ 도내 주요 역사 및 공항에 청년기업, 소상공인 등 팝업스토어 입주현황 조사

㉯ 코레일유통,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MOU 추진 및 입점 수수료 도비 지원 방안 검토

⑧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가칭)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24.下~)
- 속도제한 강화(25→20km/h) 등 PM 안전 규정 및 전용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
- **(전북 추진 필요사항)**

㉮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세부현황 집계/공개

* 유형별 사고건수, 사고발생 장소, 「도로교통법」 미준수로 인한 시군별·위반행태별 과태료 부과 현황, 도민안전보험 통한 보험료 지급현황 등

㉯ (법 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20km/h 이하) 의무화

→ (실태조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 의무화

→ 이외 안전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 강화

3.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강화 (관계부처합동)

◇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을 통해 기업책임 강화
◇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1 추진현황

○ '24.9.6.(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확정 발표

○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8.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 수립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 강화

-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 실시,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

*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공개항목 : (현행)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 (추가)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상향,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

* (현행) 고전압 절연 + (추가)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 사업자 책임강화 〉

○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 강화

-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가 추진
-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중

○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배터리 안전성 확보 〉

○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 개선 및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 사전 감지

* Battery Management System :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

-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 추진,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 업데이트 계획

○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 연장(예 : 5년→10년 등) 및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 통한 사용자 확대 도모

*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를 8개→12개로 확대

○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 추진

* 표준(안) : (1단계, 주의) 정비 필요, (2단계, 경고) 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 위험) 소방 출동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

○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 강화

* (2024년) 2만기, (2025년) 7.1만기

○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

* (2025년) 2만기, (2026년) 3.2만기, (2027년 이후) 27.9만기

○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 상향

* (2024년) 3,100기, (2025년) 4,400기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

○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화재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및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
-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 유도

※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 신속하게 화재 진압

* 스프링클러 헤드와 배관만 설치된 소방시설로, 소방차와 연결하여 화재 진압

○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강화 및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방안 검토

* 예 : (감지기) 열 감지기 →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 / (대상) 모든 지하주차장 등

○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

○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기존 건물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개정

〈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

○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

* ▲이동식 수조: 297→397대 ▲방사장치 : 1,835→2,116개 ▲질식소화덮개 : 875→1,131개

-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

○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 마련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앱의 빠른 메뉴에 전기차 항목 신설, 집중신고제 운영 등

○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

〈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방안 마련 〉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

*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 추진

○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검토 예정

3 향후계획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

○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생활환경과, 예방안전과]

○ 전북자치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의2 (화재안전시설)에 따라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화재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북자치도 자체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음

○ 또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대상 단지와 이전 불가 대상 단지를 구분하여, **'지하 전기차 지상 이전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관련 조례를 근거로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사업의 확대를 계획중에 있음

〈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월

(사업규모) 충전시설 40대 (급속 2, 완속 38)

(시행주체) 6개 시·군 (전주,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사 업 비) 154백만원 (도비 $^{20\%}$30.8, 시군비 $^{80\%}$123.2)

(보조금액) 급속충전시설 최대 20백만원/대, 완속 3백만원/대
- 최대 보조금 이상 발생하는 금액은 충전시설 관리주체 부담

(지원대상) 지하에 위치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충전시설 관리주체

(지원제외) 지하 충전시설을 철거하고 지상에 새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 환경공단 등 타 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대상자 선정) 건축물 노후 정도, 소방시설 접근 용이 정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설정

〈 공동주택 지하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5. 1월 ~ 6월 ※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사업대상) 충전시설 지상이전 불가대상 27단지

구 분	계	전 주		군 산	익 산	완 주
		완 산	덕 진			
수요조사	**32**	6	15	3	1	7
사업신청	**27**	5	13	3	1	5

※ 지상이전 불가대상(32단지) 사전 수요조사 완료(8.1. ~ 8.9.)

(사업내용) 화재안전시설 4종(방화벽, 질식소화포, 상방향방사장치, CCTV)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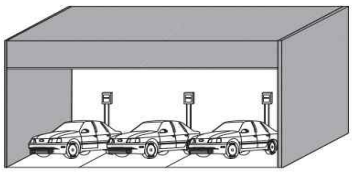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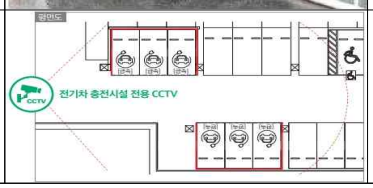
(추진방법) 지방비(도, 시·군) 보조사업 ※ 도(20%), 시군(30%), 자부담(50%)

(지원범위) 설치·구입 비용의 50%(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구분	계	방화벽	질식소화포	상방향방사장치	감시카메라
계	1,500만원	최대 952만원	308만원	100만원	140만원
지원기준(단지별)	-	최대 4개면	1개	1개	1개
지원금액	750만원	최대 476만원	개당 154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70만원

※ 단지별 최대 750만원(도비 300, 시군비 450) 지원

(지원시설) 화재안전시설 4종(방화벽, 질식소화포, CCTV, 상방향방사장치)

구분	사 진	제 원	규 격
방화벽		▸ **내화성능 1시간 이상 조적식 격벽 설치** ▸ 주차구역 3면 또는 2면 방화구획	면당 27㎡ (W 5.4×H 5.0)
질식 소화포		▸ **초기소화 및 연소 확대 방지용** ▸ 전용주차구역 인근 보관할 수 있는 **별도 공간(보관함) 필요**	유리섬유&실리카 (6M×9M, 25kg)
상방향 방사장치		▸ **화재 초기 차량 하부 설치**(수동) ▸ **외부**(소화전, 소방차)로부터 **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 ▸ 충전구역 인근 보관할 수 있는 별도 공간(보관함) 필요	1.3M×0.5M (스테인레스)
감시 카메라		▸ **24시간** 감시 가능한 성능 ▸ **방재실 또는 관리실에 상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4M 픽셀 이상

4.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차 선정 결과(교육부)

◇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창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

□ 개 요

○ (**내용**)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등이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 (**대상**)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19개 지역) **중 12개 지역**

○ (**운영규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학년 또는 지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

○ (**운영기간**) 3년 또는 2년

※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지역의 경우 '24.9~'27.2, 2차 지정 지역은 '25.3~'27.2 지원

○ (**지원액**) 지역별 최대 7억원('24, 지역교육현안특교 약 69.4억원)

○ (**성과관리**) 학교·지역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성과관리 및 환류,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 등 추진

* 지역별·학교별 사교육비 경감률,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 이행 또는 성과가 미흡한 지역·학교의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선정 결과

○ (**신청**)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중 14개 지역

○ (**선정**) 교육정책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컨설팅)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12개 지역 선정**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중 지원대상(12개)	(**1유형**[기초지자체]) 춘천, 원주, 구미, 울진 (**2유형**[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 미선정된 2개 지역은 향후 2차 선정 시, 사업계획 보완 후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프로그램)** ①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②기초학력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③자기주도 학습 및 상담 지원 ④지역사회 및 대학 및 기관 연계 특색 프로그램 지원 등

①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별로 사교육 경감이 필요한 특정 학년이나 과목을 지정하여 해당 학년, 과목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

춘천 "수학포기자 없는 더 나은 미래교육"

- **(대상)** 책임 학년(초3, 중1, 고1) 대상, '수포자 없는 중점학교' 5개교
- **(주요내용)** 예비교사(RISE연계 대학생) 수학 1:1 상담(멘토링), 레벨업(Level-up) 수학 캠프, 수학 전화 상담실(콜센터), 디지털 수학교구 및 공학 도구 지원, 이비에스(EBS) 수학(Math) 등 온라인 콘텐츠 지원 등

부산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

- **(대상)** 중학교 1학년
- **(주요내용)** 위캔두(WE CAN DO) 계절학교(국영수),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부산학력향상지원 시스템(BASS)을 통한 맞춤 학습 지원, 부산형 인터넷 강의 제작·보급(현직 교원 48명)

제주 "질문 있는 학습"

- **(교사-학생)** 사교육 경감 중점 고등학교(24개교)를 대상으로 1개 교과, 1시간 학습 관련 질의응답 프로그램 진행(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운영)
- **(학생-학생)** 학생 간 연결(매칭)을 통해 상호 학습 상담(멘토링) 및 공부법 공유, 학습자료(EBS 교재 등) 제공

②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역별로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증진 및 교과보충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 중,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기초학력 증진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 **(원주)**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가'를 채용하여 방과후·방학 중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자기주도학습 계획 수립, 학습관리 상담, 교과보충 지도 등) 실시
- **(대구)** '대구미래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습도움닫기, 학습집중채움' 프로그램 및 교재 지원
- **(울산)** 출발선 보장 교과보충 통합 프로그램(인공지능 활용 한글·수리력 진단 및 지도)
- **(전북)** 농산어촌고교 대학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문화 예술 캠프 등)

③ 자기주도 학습 및 상담(멘토링) 지원

학교 내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EBS 및 지역 대학(글로컬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진도 관리, 진로 상담 및 학습 중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전남 "이비에스(EBS) 인공지능 상담 학교(AI 멘토링 스쿨)

- **(대상)** 무안고와 이비에스(EBS) 간 협약을 통해 학교 단위로 운영(시범운영 후 타 지역 확대)
- **(주요내용)** 이비에스(EBS)의 인공지능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수준별 학습관리(Teaching+Coaching+Care), 온·오프라인 연계 운영, 학교 단위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

지역대학 연계 대학생 상담(멘토링)

- **(광주)**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의 대학생 보조교사(약 350명)가 교사와 협력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문해력, 기초 수학 등 학습 보조 및 상담 실시(주 2회)
- **(경남)** 학교 내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경상국립대, 진주교대, 거제대 등 지역 대학생들과 상담(멘토링) 실시
- **(원주)** 대학생(100명)이 초·중학생 대상으로 기초학력, 독서, 문해교육 등 실시(1일 최대 2시간)

④ 지역사회 대학 및 기관 연계 특색 프로그램 지원

지역 내 대학 및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특별 체험 수업, 놀이 영어, 신산업(무인기(드론)·로봇 등) 중심의 체험형 방과 후 프로그램, 진로 탐방 등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 제공

지역대학·기관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 **(울진)** 한수원과 연계한 진로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국립해양과학관 안전체험관 특별 체험 수업,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연계 놀이 영어 캠프, 울진군 국제교류사업과 함께하는 영어 체험 캠프 등
- **(경남)** 경상국립대·진주교대·거제대 등 대학 연계 캠프, 미래조선단지, 항공 유지·보수·정비(MRO)단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등 기관과 연계한 진로 탐방 프로그램
- **(구미)** 금오공대 연계 방과 후 학교(무인기(드론), 로봇, 코딩 등 신산업 체험 프로그램)

○ **(기타)** 한국방송공사(EB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 선정 지역에 EBS 인공지능 상담 학교(AI 멘토링 스쿨), 진로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

□ 향후 일정

○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2차 선정 실시('24.9~)

※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지역, 1차 선정지역 중 미신청 2개 지역 등 대상

≪ 전북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교육협력과]

○ 지난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에서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주제로 도내 5개 시·군이 참여하는 3유형으로 지정되었음

○ 교육발전특구 1차로 지정된 19개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1차 공모에서 우리 지역은 **<지역별 맞춤형 사교육 경감>**이란 프로그램으로 **4개 시·군(남원, 익산, 무주, 부안)**은 **고등학교(11개교)에서 대학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완주군**은 신도시 지역 **초등 2~3학년 대상으로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할 계획임

○ 정부는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2022년 대비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4.5% 증가한 27.1조 원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5.8% 증가한 43.4만 원으로, 사교육 참여율도 0.2% 증가한 78.5%로 조사되었음

○ 교육에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20% 가구의 상위권대학 진학률이 하위 20%보다 5.4배나 높게 나타나 최근 한국은행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음

○ 이번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1차 선정으로 2~3년간 최대 연 7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므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다른 교육사업과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촌지역에서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협력하여 우수한 프로그램 설계로 사교육경감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 고 [전북] 지역별 맞춤형 사교육 경감

▸ 인구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 모델 개발

□ 주요내용

○ (남원/익산/무주/부안) 농산어촌 고교 대학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고 11개교)

- (AI 진로 프로그램) AI 기반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 컨설팅, 진로 전문 강사 초청 강의, 면접 등 집중 지도
- (특기적성 프로그램)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학생부 동아리 활동(문화예술캠프, 독서 인문학 캠프, 학생 주도 동아리 등) 지원
- (자기주도학습) 방과후, 방학중 다양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토요 모의고사반 등) 및 자율학습공간, 석식 등 제공

○ (완주) 신도시 지역 등 초등 2, 3학년 무상 방과후 지원을 통해 '24년 초 2, '25년 초 3학년 대상 늘봄학교 확대 실시 (초 6개교)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 (경기도)

◇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함

1 추진배경

○ 경기도 민선 8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비전으로 제시('22.06.), 도시와 농어촌 간, 농어촌 내 양극화 심화로 농어촌 사회의 붕괴 가속화

○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미래 투자** 필요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업 교육 참여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2 주요내용

○ **시행시군** : 11개 시·군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접수** : 경기도 공고('24.09.04.)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신청기간, 신청자격 등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문의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 방문 신청 또는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 **지급시기** : 2024. 12월 중 지급 예정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24.07.제정)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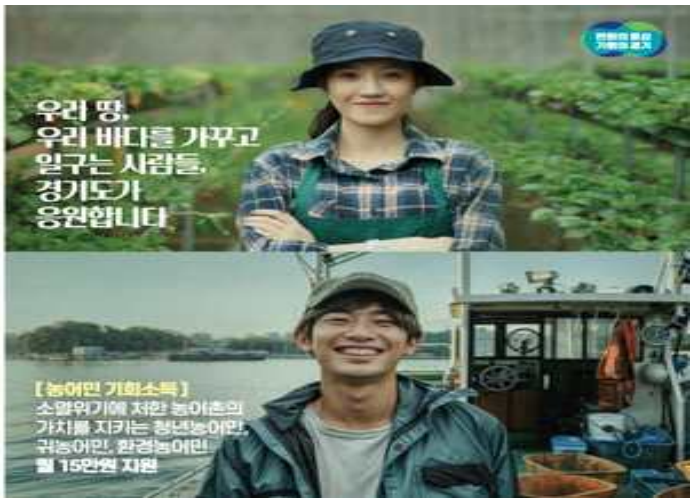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비교>

구 분	농민 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도내 등록 농민(만 19세 이상)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 인증 cf. 일반 농어민 2025년부터 지급 예정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최근 2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동일
영농(어) 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동일
지급금액	월 5만(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월 15만(연 180만원) 시·군 지역화폐 지급 cf. 일반 농어민 '25년부터 월 5만원씩 지급
지급방법	매달 지급(연 12회)	분기별 지급(연 4회)
사업비 ('24년 기준)	약 1,312억원(약 21만 8천명) *재원비율: 도비50%, 시군비 50%	**약 80억원 (약 1만 7,700여 명)** *재원비율: 도비50%, 시군비 50%
비 고	· '**25년 1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 으로 통합 운영 예정**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제외함	

3 기대효과

○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적 육성**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농생명정책과]

○ '농어민 기회소득' 이란 농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기존 농민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음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하여 **'사회적가치 창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선순환 효과도 있음. 단, 지급 대상으로 ①청년, 귀농, 친환경 농어민(월 15만원, 연 180만원) ②일반 농어민(월 5만원, 연 60만원) 대상 지급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전북자치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및 증진하고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24년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는 농업, 양봉 농가 등 **'가구'를 기준**으로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 - 사업기간 : '24. 1. ~ 12월
> - 사 업 량 : 12만 호
> - 사 업 비 : 72,000백만원 (도비 28,800, 시군비 43,200) ※ 도비 40%, 시군비 60%
> - 사업내용 : 신청년도 기준 2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25년부터는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농민당 30만원씩 지급**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임

구 분	현 행	'25년 개편(안)	비 고
지원대상	농 가	농업인	
지원금액	60만원/농가	1인 60만원, 2인이상 1인당 30만원	예) 3인 90만원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이 외에도 최근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거론되고 있음. 전북자치도의 경우, 열악한 산업구조와 고용문제로 지난 20년간 약 22만 6천여명의 청년층이 전북을 이주하였고, '24년 4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24.5%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함

○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통계청, '24.05.)>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농가소득**은 **5,017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4,291만원 1천원) **약 16.9% 증가**하였으나, 반면 **농가 부채는 4,080만원**으로 전년 대비(3398만 8천원)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1> 지역별 농가수지, 2022-2023

(단위: 천원, %)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 산	부 채
	2022	2023	증감률			
전 체	46,153	50,828	10.1	37,953	608,043	41,581
경 기	52,730	53,151	0.8	44,696	933,173	62,853
강 원	50,375	52,906	5.0	38,831	588,384	38,627
충 북	41,568	49,554	19.2	35,975	505,052	22,350
충 남	45,485	50,570	11.2	34,799	575,885	27,118
전 북	42,911	50,174	16.9	37,349	466,951	40,800
전 남	45,565	49,634	8.9	33,693	376,108	33,124
경 북	45,672	49,917	9.3	32,965	492,936	27,311
경 남	41,008	49,249	20.1	40,180	600,662	34,099
제 주	58,240	60,531	3.9	47,327	961,714	94,476

<출처: 통계청>

○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 비중이 큰 전북에서 농어민을 위한 기본소득 확대 등 제도 논의도 필요할 때임

참고 2024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안내



2. '아이 꿈 수당' 사업 시행 (인천광역시)

◇ **2024년 출생 정책의 대전환기를 기점으로 올해 기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가구의 부담 완화**

1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정부 아동수당*이 만 7살에 종료된 이후 학령기에 국가 지원의 공백기 발생**으로 8세부터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미반영함

*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2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08.01.~ (상시) ※ 아동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 ('24년 기준 '16년 출생 대상)

* 지급개시 : '24년 16년 출생아, '25년 17년생 출생아, '26년 18년생 출생아 '**매년확대**'

○ **(신청요건)**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아동

○ **(지원기간)** 8세 ~ 18세 (11년간, 1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 **(지급금액) 월 5만 ~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16년생~19년생) 월 5만원, (20년생~23년생) 월 10만원, (24년생 이후~) 월 15만원

** 사용 제한업종 :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 등 학원업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정부24 접속→ '인천 아이꿈수당' 지급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3 기대효과

○ '아이 꿈 수당'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하나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

* '1억플러스 아이드림' : 기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기존 국비 등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수당(1~7세), 아이꿈수당 등 총 2,800만원을 더하여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임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여성가족과]

○ 저출생 심화로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들의 아동수당 정책에 요구해왔던 소득기준 제한, 지역화폐 이용 등의 조건들이 완화되는 추세로, 올해 **제주도, 인천광역시**에도 지자체 재원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함

<지자체 아동수당 확대 사업 비교>

구분	제주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사 업 명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아이 꿈 수당	출생기본수당
시행시기	'24.01.~	'24.08.~	**'25.01.~(예정)**
대 상	2016년생부터	2016년생부터	2024년생부터
지급연령	**8~12세**	**8~18세**	**1~18세**
금액	월 5만원	월 5~15만원	월 2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역화폐	현금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소득기준 무관	소득기준 무관

<출처: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전라남도**는 2024년 이후로 출생하고 도내 시군에 출생신고 및 주소지를 둔 아동이 **1~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도비 10만+국비 10만원) **'아동 출생기본수당'**의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의 경우 현재 별도의 아동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 아동수당**으로 8세 미만 아동 대상(약 73,9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임 ※ '24년 사업비 : 84,047백만원 (국비78%, 도비11%, 시군비 11%)

○ **순창군**의 경우 7~17세의 다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행복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1~17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최대 월 20만원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을 발표함[3)]

3) 순창 '아이행복수당' 확대…"모든 아동 혜택" (KBS 전북뉴스 '24.09.10)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현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0~7세에서 0~17세로 확대 논의가 국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확대 및 금액 상향, 환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개 가량 계류 중임('24.09.25.기준)

* 아동수당 지급액은「아동수당법」2018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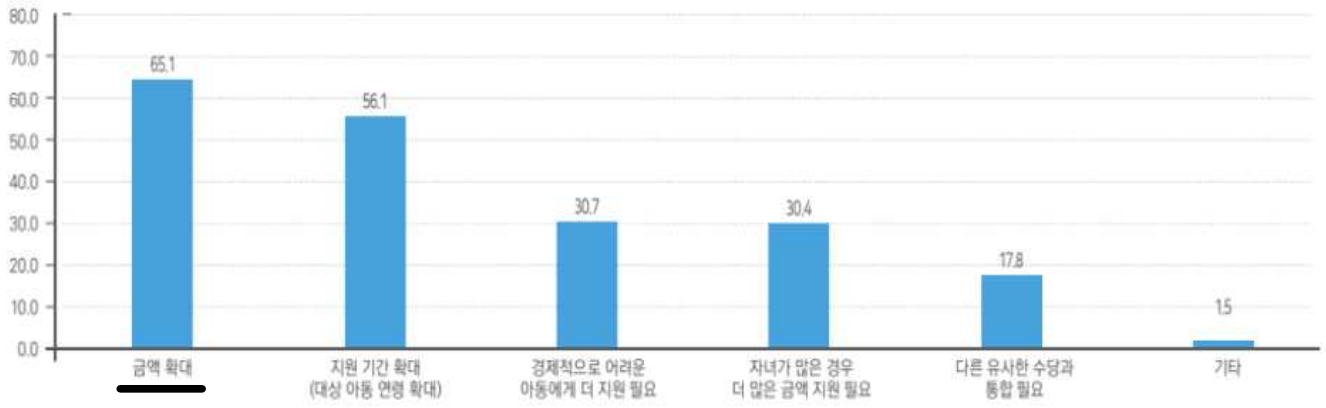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4]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함

○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 있게 보완되기 위해,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닌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처럼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 아동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지원**이 필요함[5].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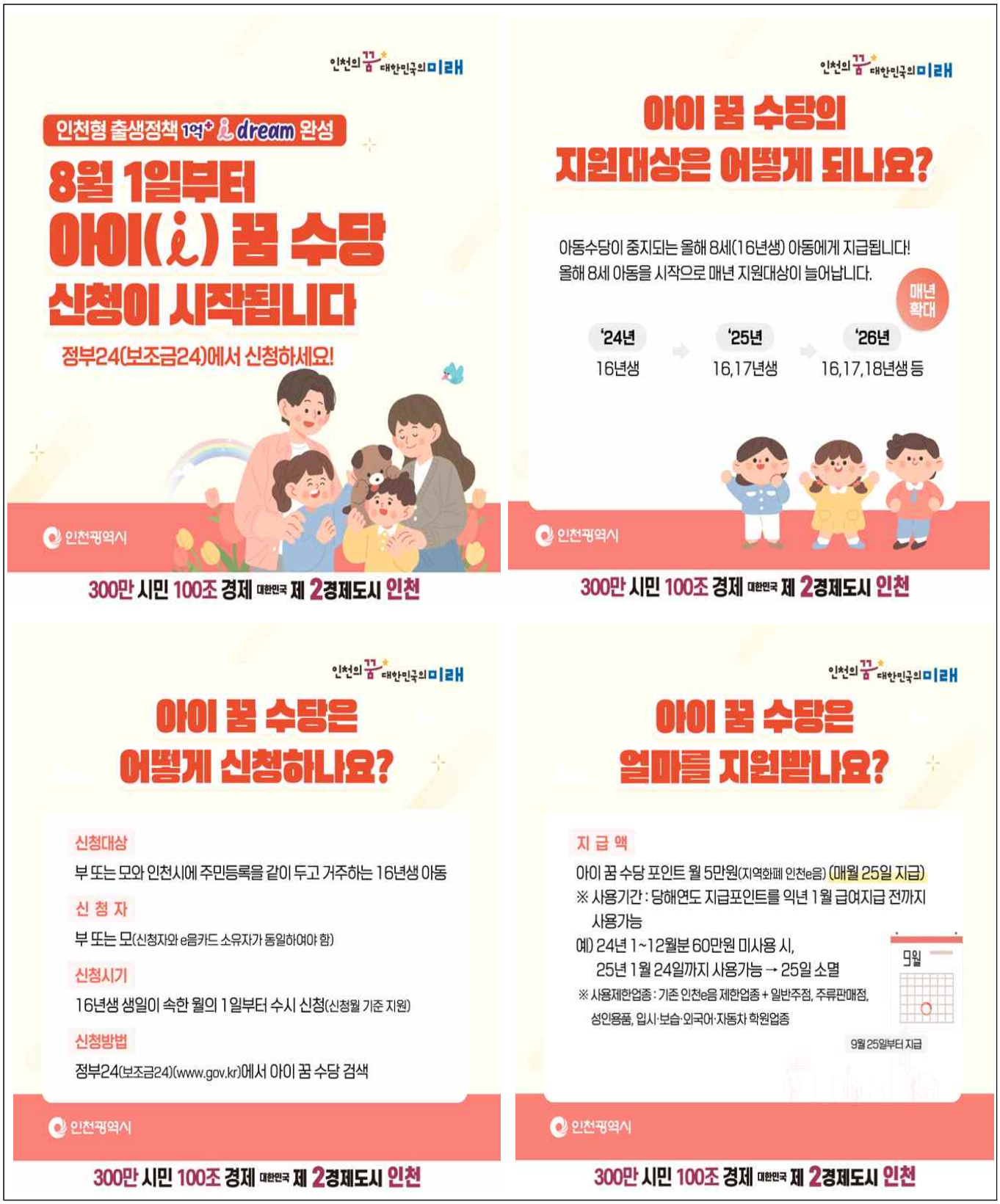


*주: 조사 당시 자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으로, 총 2,000명 대상 설문
<출처: '아동수당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23.08.)

5)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05.)

참고 **인천형 출생정책 - '아이 꿈 수당' 사업 안내**



<출처 : 인천광역시>

3. 2025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광주광역시)

◇ 2025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시급 결정에 따른 고시

1 추진배경

○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생활임금) 시급액 12,930원

- 월급 환산 2,702,3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월급 환산 : 2,096,270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월급 환산 : 2,060,740원

○ (산정기준)

- 재정 여건,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적용대상)

-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
- 광주광역시로부터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시비 100% 또는 국·시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

○ (적용시기) 2025. 1. 1. ~ 2025. 12. 31.

3 기대효과

○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저임금 노동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부문인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및 자회사, 공공 일자리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기업에도 입찰계약, 기업인증, 신용 보증 방안을 마련하였음

※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확대 :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적용('17년~)

시 투자출연기관	'15년 적용(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16. 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
자회사	'17년 적용(3개사 총 3,600명 적용)
공공 일자리	'17년 뉴딜일자리 우선 적용(5,500명), 공공일자리 사업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기업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유도

입찰 계약	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17.1~)
기업 인증	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 보증	신용보증재단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17. 8~)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경기도는 2014년도에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하였음. 2017년부터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면서 민간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업력 2년 이상의 지역 내 소재 기업 중 노동자에게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2년 이상 생활임금 지급을 서약하는 제도로 연 1회 의무이행 검사를 거쳐 2년간의 생활임금 서약이행을 완료하면 이행서를 발급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 부여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경기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생활임금을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적합한 기관**으로 ① 공공성이 있는 경기도내 대학, 중대형 병원, 은행, 초중고 등이고 ② 지자체로부터 R&D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는 관내 기업 및 단체 등 ③ 지자체 관내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자활센터, 복지센터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 타 시도 개별조례의 생활임금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및 소득보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소득보전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의 보수기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보수기준의 통보)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6조(임금기준)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전북자치도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행 중이고, 도내 5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장수군)도 생활임금 조례가 있으나 2024년도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만 시행 중임

< 생활임금 조례 시행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

(단위 : 원)

지역명	2024년			2025년			재정자립도	비고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		
전북특별자치도	11,813	94,504	2,468,917	12,014	96,112	2,510,926	23.5%	
전주시	10,740	85,920	2,244,660	미정			21.7%	
군산시	10,550	84,400	2,204,950	10,730	85,840	2,242,570	16.1%	
익산시	10,040	80,320	2,098,360	미정			14.7%	

※ 남원시와 장수군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 전북자치도 및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시행하는게 이상적이지만 11개 시군에서는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전북자치도는 생활임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에 지역 차이 없이 생활임금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음

○ 전북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도 필요함

참고 17개 시도 생활임금 현황 및 재정자립도

지역명	2024년		2025년	재정자립도		비고
	금액	순위		비율(%)	순위	
서울특별시	11,436	7	11,779	74.0	1	
부산광역시	11,350	15	11,918	45.1	6	
대구광역시	11,378	13	11,670	44.3	7	
인천광역시	11,400	12	11,630	49.6	4	
광주광역시	12,760	1	12,930	40.7	9	
대전광역시	11,210	17	11,636	41.7	8	
울산광역시	11,210	16	미정	46.3	5	
세종특별자치시	11,416	10	11,795	57.5	2	
경기도	11,890	2	12,152	55.1	3	
강원특별자치도	11,415	11	11,678	25.2	14	
충청북도	11,437	6	11,803	30.4	13	
충청남도	11,500	5	11,730	32.4	12	
전북특별자치도	**11,813**	**3**	12,014	**23.5**	**17**	
전라남도	11,730	4	11,930	24.4	16	
경상북도	11,433	8	11,670	24.6	15	
경상남도	11,356	14	11,670	33.6	11	
제주특별자치도	11,423	9	11,710	34.0	10	
평균	11,539					

4.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 '24. 9. 1.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함

1 추진배경

○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어 돌봄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임

○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가 존재함

2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

○ 신청대상 : 서울시민('24. 7. 17. 주민등록기준)

▶ 만 12세(2011. 7.18.이후 출생)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연령(어릴수록) 및 이용기간(길수록)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신청기간 : 2024. 7. 17(수) 09:00 ~2024. 8. 6 18:00(3주간)

* 이용가능일 : 월~금 / 대상 : 서울시민('24. 7. 17. 주민등록기준)

○ **이용기간 : 2024. 9월초 ~ 2025. 2월말(6개월)**

○ 서비스 유형 : 시간제(4, 6시간) 종일제(8시간) 중 선택 * 통근형만 가능

○ 서비스 내용 :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 동거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최저임금(2024년 9,860원)+법정 4대사회보험료 등 포함

○ 신청방법 : ㈜홈스토리 생활, (주)휴브리스 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3 기대효과

○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외국인국제정책과]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대한민국에 맞는 방안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제도임

< 홍콩의 가사 도우미 제도 >

○ (최저임금)
- 4,730홍콩달러(약 80만원)
- 홍콩 내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25~54세 홍콩 기혼여성 노동자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30% 이하임

○ (외국인 가사도우미 현황)
- 1990년 7만 333명 / 2023년 33만 8천 189명 / 4.6배 상승
- 국적 : 필리핀 56.2%, 인도네시아 41.4%임

○ (제도의 효과)
- 정책 도입 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0~14% 증가함
- 가사도우미의 상대임금이 1990년대 기혼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해 30~40%로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음

○ (만족도 조사)
-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음
- 절대 다수는 계속 홍콩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

※ 대한민국 도입 시 참고점
- (최저임금 수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층도 가사 도우미를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

※ (필리핀 정부 입장 임금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늘려 주기를 바람

.< '24. 7. 19. 서울시 주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기조 발제문 정리 >

○ 전북자치도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 다만 법무부에서 최근 시행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허용 확대」 시범 운영 희망 수요 파악을 '24.10.11.(금)까지 진행중임(참고 2)

< 서울시 시범사업과 법무부 시범운영사업 주요 사항 비교 >

구분	서울시 시범사업	법무부 시범사업
개요	필리핀 국민 중 요건을 갖춘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서울시 가정에서 일하도록 함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전문인력의 배우자 등이 가사·육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
계약방식	대리사업체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계약, 한국 가정과 대리사업체 간 계약	서비스 제공자(외국인)-이용자(국민) 간 **1:1 서비스 이용 계약**
비용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배제** 당사자 간 합의
근무형태	시간제(4, 6시간), 종일제(8시간) 중 선택	좌동
업무범위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가사 · 육아
외국인 요건	유창한 영어실력,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필리핀 직업훈련원 780시간 이상교육 이수자,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D-2, D-10),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D,E계열)의 배우자**(F-3) 중 **성년인 사람**
이용자 요건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 순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출산 예정 가구 포함)

○ 서울시와 법무부 사업의 최대 차이점은 최저임금의 적용 여부임. 서울시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 법무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4. 8. 27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음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대한민국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월 238만원 정도 지급함. 홍콩은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임. 대한민국은 고소득 가정을 대상으로만 사업이 실시될 우려가 있음.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가사관리사를 쓸 수 있을 것임

<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논점 >

구분	최저임금 적용 계속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예외 (세미나 주장 요약)
합리적 차별 여부	·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임.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합리적 차별한 근거 부족함 ·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정도를 본국에 송금함(근로자 1인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외국 거주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음) ·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함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도 가능
업종별 구분	·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음
지역 차등	·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	

○ 최근 시행된 서울시 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하여 문제가 되었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일자리 이탈의 이유는 높은 보수를 받는 직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함. 같은 비자로 E9비자로 들어온 제조업체 근로자들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의 보수보다 낮은데 불만이 있고,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고 싶은 서울시의 가정은 가사관리사의 임금이 높아서 이용에 곤란이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더 많이 채용해주기를 원하는 등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음

○ 전북자치도에서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및 법무부에서 최근 시행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허용 확대」 방안 중 전북자치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을 막을 방법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준비해야 할 것임

참고 1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참고 2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허용 확대」 시범 운영 세부 내용

1 제도 개요

지자체 → 업무범위 설계 가능

○ **(개요)**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전문인력의 배우자 등이 가사·육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

○ **(계약 방식)** 서비스 제공자(외국인)-이용자(국민) 간 **1:1 서비스 이용 계약**

○ **(비용)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

○ **(근무 형태) 출퇴근형**(시간제·전일제)

○ **(업무 범위)** 가사·육아

- **(가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장보기 등
- **(육아)** 만 6세 이상 미성년 자녀 육아 (돌봄, 등하원(교) 등)

※ 법무부는 만 6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돌봄을 권장하나, 지역 수요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돌봄도 설계 가능(단, 교육 요건은 아래 권장교육 콘텐츠(안) 참고)

→ **(지자체) 업무 범위 및 서비스 이용 가정 기준(3 이용자 요건 참조) 설정** 가능

→ **(당사자) 지자체가 선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합의에 따라 **가사, 육아 복수 선택** 등 가능

2 서비스제공자(외국인) 요건

지자체 → 한국어능력, 교육과정 설계 가능

① **(대상자)**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D-2, D-10),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D,E계열)의 배우자**(F-3) 중 **성년인 사람**

② **(한국어 능력)** 업무 범위별로 **한국어 능력 요건 차별화**

- **(가사)**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3단계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최소기준)
- **(육아)**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최소기준)

③ **(교육)** 업무 범위·단계별 교육 이수 **(지자체 교육 운영)**

※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교육 콘텐츠 활용 가능

<권장 교육 콘텐츠(안) >

❶ **(필수)** 한국사회 이해, 기초 법률, 안전교육, 아동학대·성폭력 예방 교육, 응급상황·인권침해 시 대응, 임금체불 시 구제 방법, 계약서 작성 방법 등

※ 계약서 샘플 등은 추후 법무부 제공 예정

❷ **(가사)** 가사 기본 교육

❸ **(육아)** 아이돌봄 기본 교육(만 6세 이상 아동 돌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육아 활동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120시간, 대면교육, 47만원 자부담) 이수자, △관련 전공자*는 ❸육아 교육이 면제**(단, 필수교육은 이수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자격을 갖춘 경우

④ **(건강)**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정신질환 진단 결과 포함) 제출

⑤ **(범죄경력)** 국내·외 형사범죄 기록(기소유예 포함)이 있거나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제외(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상기 요건은 **법무부가 제시하는 기본 요건**으로, ②,③,④,⑤ 요건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최소 기준 이상의 요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추가 설정 가능**

3 이용자(국민) 요건 **지자체 ➔ 대상 설계 가능**

○ **(대상)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출산 예정 가구 포함)

※ 단, 안전을 위해 **육아는 만 6세 이상 가정을 원칙**으로 하되, △여가부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120시간) 이수자, △관련 전공자 등에 한해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육아 활동 허용**

➔ **이용자 요건은** 지자체 자율로 설정하되,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육아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도 고려 필요)**임을 고려하여 설계** (예: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우대 등)

○ **(주의사항 안내)** 서비스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 추후 상호인권 존중 안내 동영상 법무부 제작·배포 예정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KDI) ('24.6.)

<< 분석요약 >>

◇ 연령에 따른 직무분석결과, 취업자들은 청년기에 자료분석 등 전문적 업무를 주로 수행
◇ 중년기 이후엔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의 직무단절에 기인
◇ 향후 노동공급 감소 예상,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중장년층 인력 효율적 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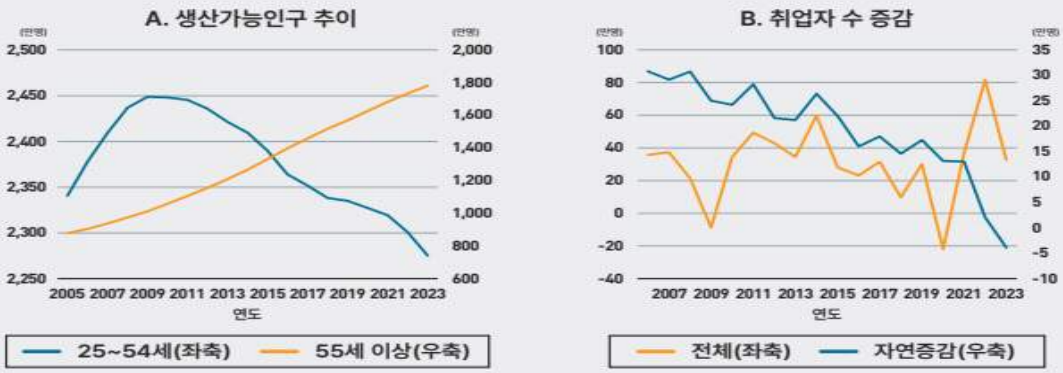
□ 분석배경

○ **젊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 가시화
○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 높여야 할 필요성 대두
○ **중장년층의 직무단절** 예방과 **가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언

□ 주요내용

1.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취업자 수 증감》



주: 취업자 수 자연증감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취업자 수 변화분으로, 고용 여건과 무관하게 인구수 및 인구구성에 의해 변화하는 취업자 수 증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23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25~54세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이후 지속 감소세**

⇒ 55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 **향후 젊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폭** 더욱 확대 예상

⇒ 젊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취업자 수에도 영향** (노동공급 감소 가시화)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2008년	2013년	2018년	2023년
25~54세	76.6	77.3	79.3	80.0
55세 이상	45.6	48.3	50.9	53.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2023.

⇒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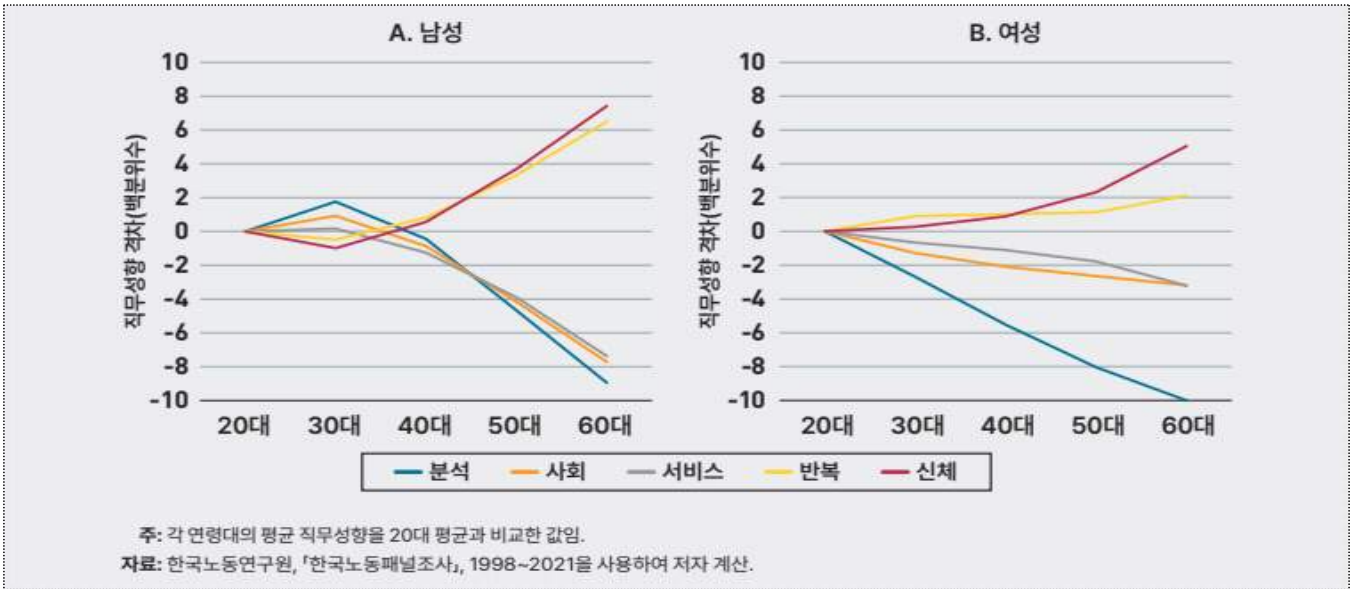
* 기대수명의 증가, 각 개인이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할 필요성 확대

⇒ 최근 5년간(2018~23년) 25~5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3%에서 80%로 **약 0.7%p 상승**하였으나,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에서 53.8%로 **약 2.9%p 상승**하며 **훨씬 가파른 상승세** 기록

⇒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자 수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 또한 **중장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무관하지 않음

2. 취업자 연령에 따른 직무 구성의 변화

《취업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의 변화》



주: 각 연령대의 평균 직무성향을 20대 평균과 비교한 값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21을 사용하여 저자 계산.

⇒ 취업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분석', '사회', '서비스' 직종의 직무성향**은 **낮아지고, '반복', '신체' 직종의 직무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직무성향은 **30대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후로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특히 **50대 이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서비스' 직무도 '분석' 직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반복', '신체' 직무성향은 **30대에 가장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하는 대칭적 모습을 보임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석', '사회' 직무보다는 **'반복', '신체'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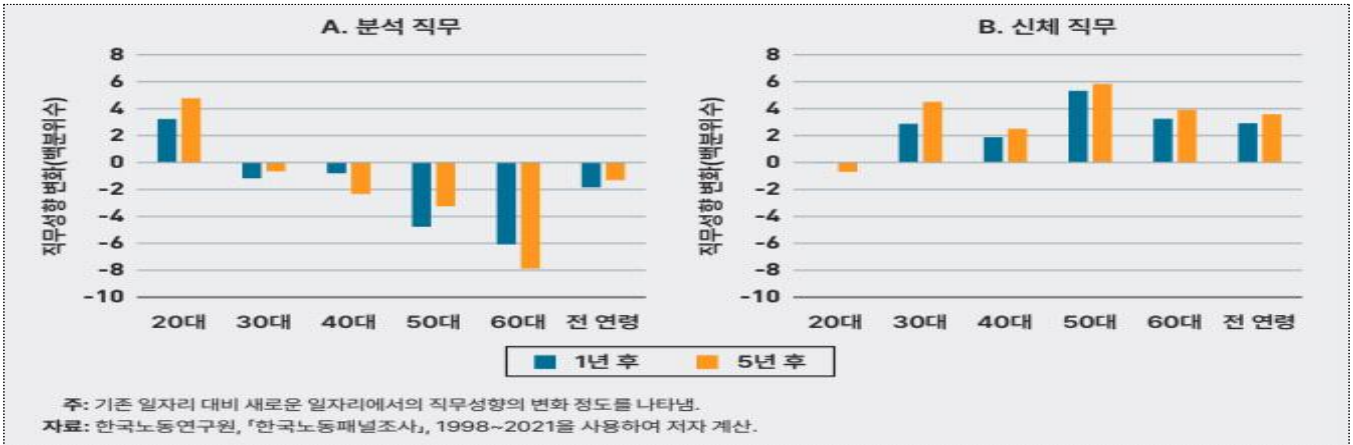
⇒ **여성 취업자**의 경우, '분석' 직무를 제외하고는 남성에 비해 **연령별 직무성향의 차이가 작았으며**, 특히 **'사회 및 서비스' 직무**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 또한, 여성 취업자의 '분석' 직무성향은 **20대에 가장 높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여성 취업자의 경우 남성보다 이른 시기에 일자리의 질이 하락한다는 뜻으로,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중년 이후에는 남성에 비해 직무 구성 변화를 덜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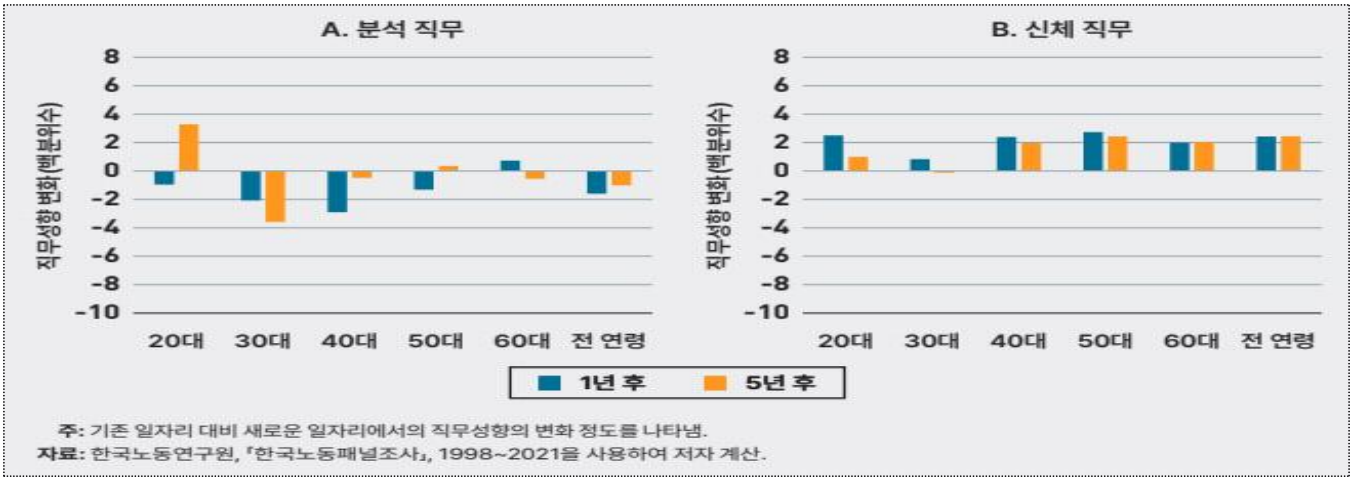
3. 연령에 따른 직무구성 차이 :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

《연령대별 이직 전후 직무성향의 변화 (남성)》



주: 기존 일자리 대비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직무성향의 변화 정도를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21을 사용하여 저자 계산.

《연령대별 이직 전후 직무성향의 변화 (여성)》



주: 기존 일자리 대비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직무성향의 변화 정도를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21을 사용하여 저자 계산.

⇒ 대체로 **이직 후 '분석' 직무성향은 낮아지고 '신체' 직무성향은 높아짐**

- 50세 미만 연령대에서 이직한 경우 '분석' 직무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고,
- 20대의 경우에는 이직 후 '분석' 직무성향이 이직 전보다 높아졌음

⇒ 이러한 결과는, 젊은 나이에 이직한 경우 기존 일자리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재취업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

⇒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이직했을 때에는 **'분석' 직무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60대에 이직한 경우**에는 '분석' 직무성향의 **하락폭이 더욱 컸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락폭이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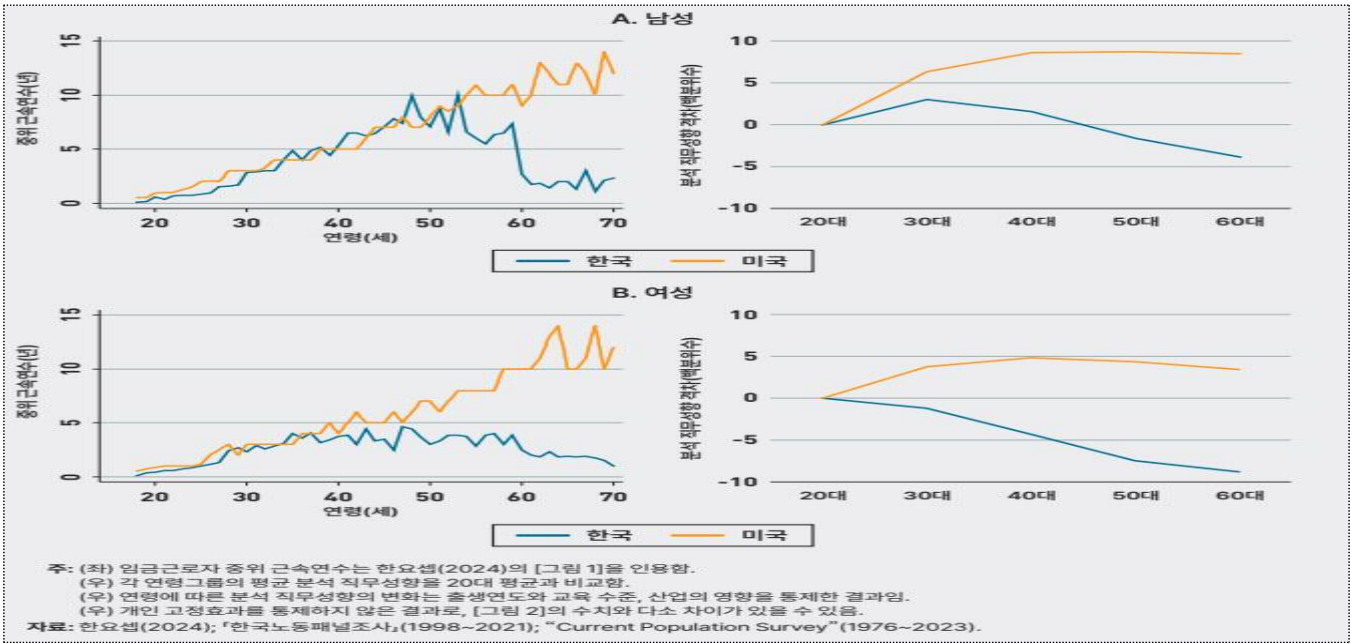
⇒ **'신체' 직무성향**은 대체로 **50세 이후의 이직에서 상승**하였음

⇒ 결국, 50세 이후에 기존 일자리를 떠나게 될 경우 **기존의 직업과 매우 다른 직무 구성을 가진 일자리**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경우 기존의 일자리보다 **'분석' 직무성향이 낮고 '신체' 직무성향이 높은 일자리**를 갖게 됨

⇒ **여성 취업자**도 남성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분석' 직무성향이 낮아지는 시점**이 **30~40대**로 남성보다 빨랐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직했을 때에는 직무성향에 큰 변화가 없었음

4.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과 직무 단절

《한 • 미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중위 근속연수와 분석 직무성향 변화》



주: (좌) 임금근로자 중위 근속연수는 한요셉(2024)의 [그림 1]을 인용함.
(우) 각 연령그룹의 평균 분석 직무성향을 20대 평균과 비교함.
(우) 연령에 따른 분석 직무성향의 변화는 출생연도와 교육 수준, 산업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임.
(우) 개인 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로, [그림 2]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요셉(2024); 「한국노동패널조사」(1998~2021); "Current Population Survey"(1976~2023).

⇒ 근로자 연령과 근속연수가 함께 증가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남성의 근속연수**는 **5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분석' 직무성향 또한 같은 시기에 급락**함

⇒ 반면, 미국 남성 근로자의 '분석' 직무성향은 50대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음

⇒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중년 이후 '분석' 직업군에서 이탈하는 근로자들**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여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30대 중반 이후 정체**되고 **'분석' 직무성향도 30대부터 하락**하나, 미국은 30대 이후에도 근속연수와 '분석' 직무성향이 함께 증가

⇒ 결국, **미국 근로자가 중년 이후에도 기존의 일자리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것이 근로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 변화가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 한국 근로자**는 기존 일자리를 떠나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노동시장에 **중장년층의 직무단절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결론 / 시사점

1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과 고용 불안정성은 중장년 인력에 대한 낮은 수요에 영향

- 이는 **중년 이후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퇴직 후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것 모두를 어렵게 만듦
-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탈피,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확대 도입**을 통한 **직무의 연속성** 확보 필요
- 기계적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 가능성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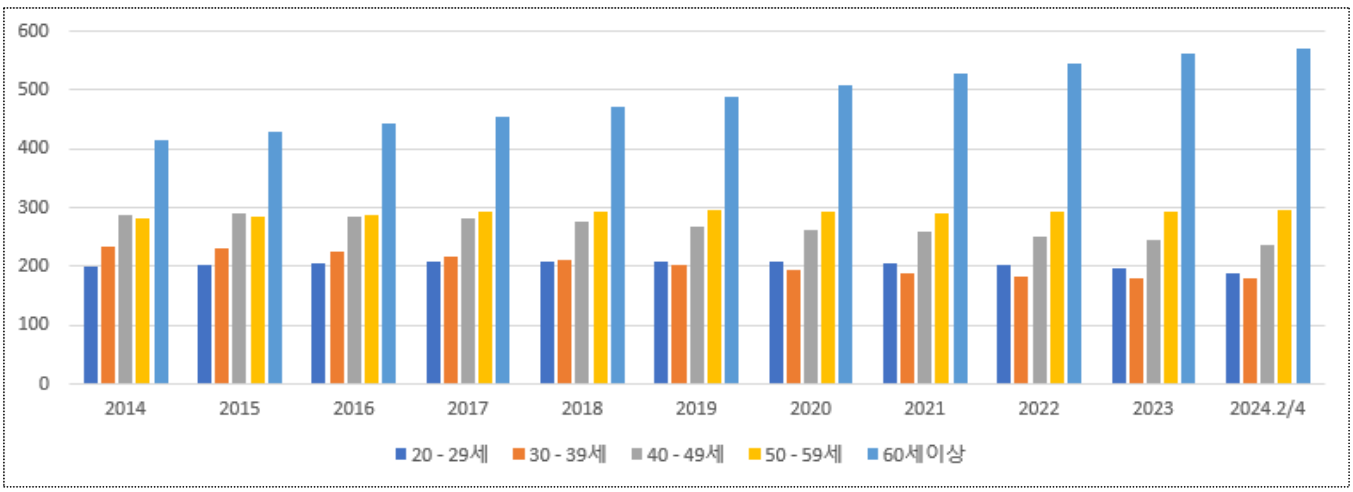
2 남성과 여성 취업자 간에도 상당한 수준의 직무성향 차이 발생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주요국 대비 낮아, 향후 노동공급 증가의 잠재력이 큰 집단이라 할 수 있음
- **남성과 여성의 직무 구성 차이**는 출산육아기인 **30~40대에 여성들이 생산성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주로 발생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및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3 전북,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2014~'24.2/4)》

(단위: 천명)



▸ 전북의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인구(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 추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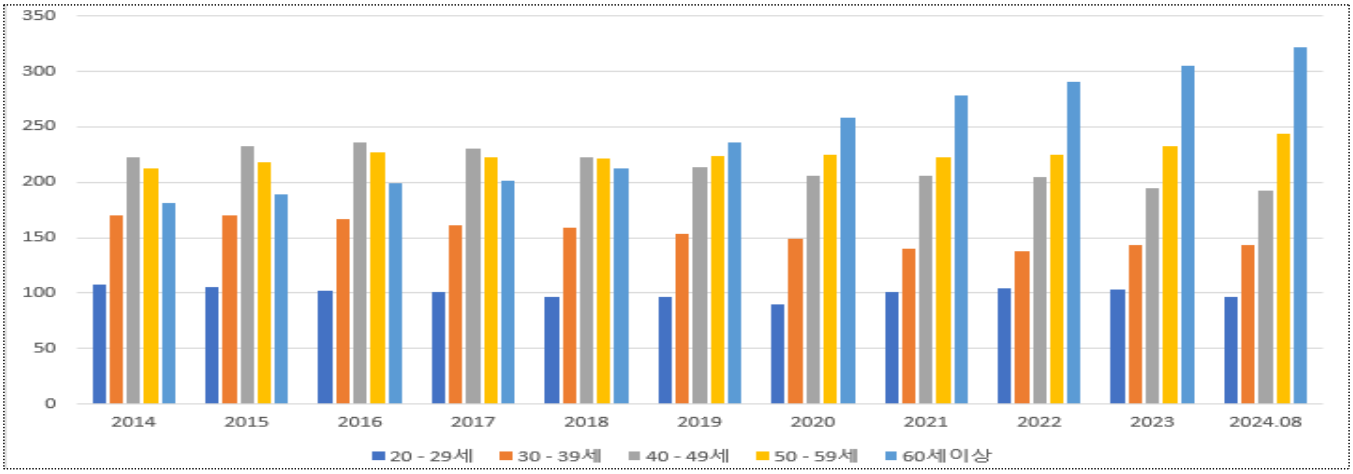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는 **2,30대는 감소세, 60세 이상은 증가세**를 나타냄

▸ 올 2/4분기 기준,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2,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p (28% → 23%)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은 **11%p 증가**하였음 (18% → 29%)

* 40대는 10년 전 대비 5%p 감소 (22% → 17%), 50대는 1%p (21% → 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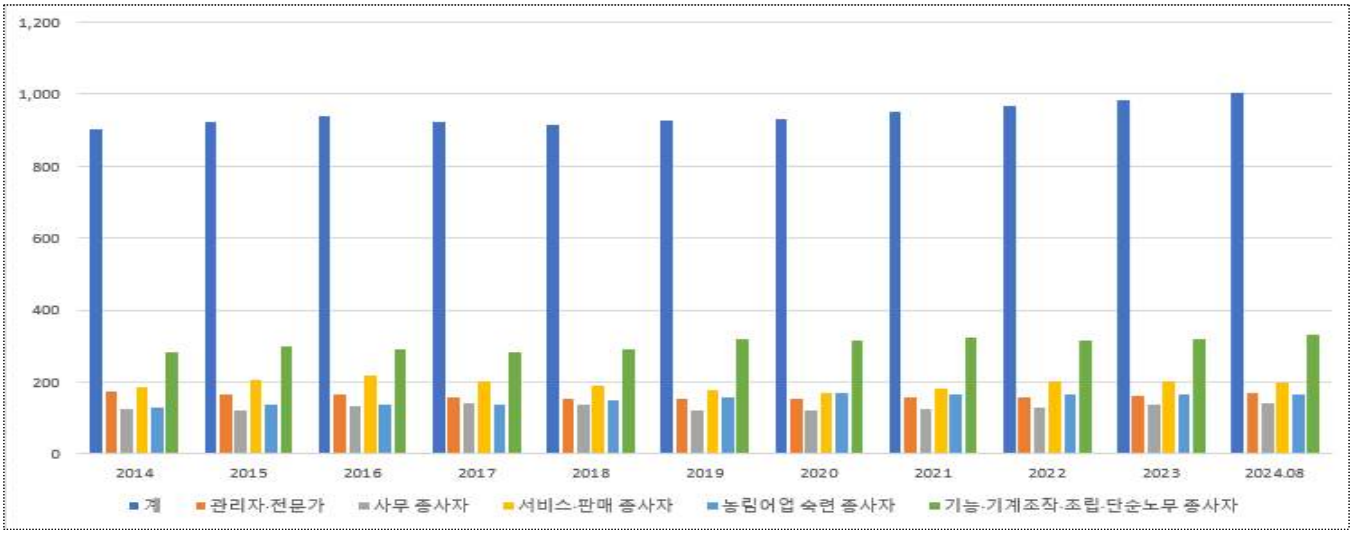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별 취업자 추이 (2014~'24.8.)》

(단위: 천명)



《전북특별자치도 직업별 취업자 추이 (2014~'24.8.)》

(단위: 천명)



- 연령대별 취업자 수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20대와 30대는 각각 10%, 16% 가량, 40대는 14% 가량 **감소**하였으나, 50대는 15%, **60대 이상은 무려 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0년 전과 비교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직종별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직종과 사무 종사자**는 **감소 또는 유사**하였고,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직종은 **증가** (2%p, 31% → 33%)하였음

- 올 5월에 공표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 전북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0년 전인 '22년 대비 **43% 감소**하고, 특히 이중 경제활동의 주축인 **25~49세는 4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와 반대로 **72%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4.8.기준) 전북의 60세 이상 인구는 58만 6천여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기대수명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75세 이상 인구가 13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과 초고령층의 경제활동에 관한 시대별 맞춤형 고용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 또한, **대부분 단순 노무에 국한된 현재의 노인 일자리 개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분야 및 사무직종**에서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2.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2014년과 2015년에 평균매출액으로 각각 개편되었지만, 소상공인의 범위 기준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임

◇ 소상공인 범위 기준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규모에 따른 기업분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이 법 시행령 제8조에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업의 범위 기준을 정하고,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한 것임

○ 시행령 [별표 3]에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1]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단위: 억 원 이하)

중소기업		소기업	
업종	기준	업종	기준
제조업(6개 업종)	1,500	제조업(15개 업종), 전기·가스·증기업 등	120
제조업(12개 업종), 도매 및 소매업 등	1,000	제조업(9개 업종), 건설업 등	80
제조업(6개 업종), 운수 및 창고업 등	800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
제조업(1개 업종), 각종 서비스업	600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각종 서비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등	400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

※ 주: 괄호 안의 업종 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에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범위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한 것임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의 소기업 범위를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함

○ 중견기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나뉘게 됨

○ 기업은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으로 나뉨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일원화

○ 2014년 4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평균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바꾸고, 상한 기준으로 자산총액(5천억 원 미만)만 남기고 나머지 세 기준(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평균매출액)의 상한은 폐지하였음

○ 이와 함께 제9조(유예 제외)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 적용 횟수를 1회로 한정하였음. 그리고 2015년 6월 시행령 개정 시 소기업 범위 기준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였음

3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

○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소기업 범위 기준이 2014년 4월과 2015년 6월에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변경되었지만 소상공인 범위 기준은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2000년에 마련된 처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하는데, 기업 범위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하면 기업은 이를 조정하여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문제가 있음

○ 소상공인 범위 기준도 중소기업과 소기업 의 범위 기준처럼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할 필요성 있음

4 평균매출액기준으로 개편 시 고려사항

○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제1항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개정해야 함

○ 소상공인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할 때도 소기업 범위 기준의 업종 분류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상공인 비중과 매출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범위 기준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된 기업을 3년 동안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도 법률에 함께 마련해야 함

《 시사점 》

○ 소상공인 범위 기준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북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준의 변경으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인공지능시대, 혁신과 규제의 AI 입법례 (국회도서관)

‹‹ 연구요약 ››

◇ 22대 국회에서 다수의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되어 AI 진흥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AI 관련 동향 및 인공지능 입법안과 관련법 현황 정리

1. 주요국의 인공지능 입법례 및 현황

□ 주요국의 인공지능 입법례



*자료: 국회(2024), IAPP(2024), 세계법제정보센터 등 재구성

□ AI 위험성



편견과 차별

알고리즘의 편향성 -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이 결과값에 반영될 수 있어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을 초래

투명성 부족 - AI의 데이터 추출 및 결정과정 불투명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보안 - AI시스템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해킹·범죄이용, 저작권 침해

감시 - AI기술이 감시 카메라와 결합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리 대체

자동화 - 인공지능 발전으로 일부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특정 일자리 도태 위기



윤리적 문제

의사결정 책임 - 인공지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책임소재 불분명

안전사고 발생 등 - 자율주행차, 의료AI시스템 오작동, 대량전력소모로 환경문제 발생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2024) 재구성

2. 글로벌 AI 지수

○ 영국의 데이터분석 미디어인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공지능 역량을 실행, 혁신, 투자 측면에서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함. 2023년 기준, 글로벌 AI지수 순위 1위는 미국으로 다른 국가와 확연한 격차를 보인고 있음. 중국가 싱가포르가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총점 40.3점을 기록해 62개국 가운데 종합 6위에 랭크됨.

	종합 순위	총점	실행(Implementation)			혁신(Innovation)		투자(Investment)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민간투자
미 국	1	100.0	100.0(1)	100.0(1)	82.8(28)	100.0(1)	100.0(1)	90.3(8)	100.0(1)
중 국	2	61.5	30.0(20)	92.1(2)	99.7(3)	54.7(2)	80.6(2)	93.5(3)	43.1(2)
싱가포르	3	49.7	56.9(4)	82.8(3)	85.7(22)	48.8(3)	24.4(5)	81.8(16)	26.2(4)
영 국	4	41.8	53.8(5)	61.8(24)	79.5(40)	38.1(5)	19.8(8)	89.2(10)	20.0(5)
캐 나 다	5	40.3	46.0(6)	62.1(23)	93.1(8)	34.0(7)	18.9(11)	93.4(5)	18.9(7)
한 국	6	40.3	35.1(12)	74.4(7)	91.4(11)	24.3(12)	60.9(3)	91.9(6)	8.3(18)
이스라엘	7	40.0	45.5(7)	60.5(28)	85.1(23)	24.8(11)	22.2(7)	31.8(47)	40.5(3)
독 일	8	39.2	57.0(3)	68.2(12)	90.7(13)	29.3(8)	19.5(9)	93.9(2)	10.3(11)
스 위 스	9	37.7	44.5(9)	68.0(13)	81.9(30)	41.3(4)	24.9(4)	9.0(56)	13.3(9)
핀 란 드	10	34.9	34.5(13)	73.0(8)	97.7(4)	27.4(9)	13.1(14)	82.7(15)	9.5(12)

*자료: Tortoise Intelligence. (2023)
*괄호 () 안은 하위 항목별 62개국 중 순위
*부문별 점수는 0-100점 사이로 1위 국가(100점)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결정

3. 진흥과 규제 중심의 AI 기본법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2024) 등 재구성

4. 한국의 AI 관련 법제

□ 현행 법률 중 AI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0조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예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바둑진흥법 제12조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6조 (소재·부품·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상생활돌봄) (시행 예정)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전자정부법 제18조의 2 (지능형 전자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항로표지법 제2조(정의), 제43조의 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 AI 기본법 발의 현황[제22대 국회]: 총 9건

법률(안)명	제안자	비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의원 등 12인	**주요 내용** - 전문인력양성 - 기술실용화, 연구개발 등 지원 -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 인공지능집적단지 육성 - 고위험 영역 확인 및 규제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제품 표시 제도 도입 등 - 자율규제(검·인증, 인공지능 윤리원칙, 민간인공지능윤리위원회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08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의원 등 19인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민형배 의원 등 13인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 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 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 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 의원 등 10인	

*자료: 국회(2024)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디지털산업과]

○ 전북자치도에서는 지역특화산업과 인공지능(AI)기술 융합을 통한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생태계 구축사업,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가명정보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 ICT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합리적 정책수행 및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인재양성에서부터 창업, 기업성장, 네트워크까지 전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디지털 혁신센터를 조성 예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어, 전북자치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한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5, 교육청-6, 기초-3:오산, 창원, 태안)

<광역자치단체 인공지능 조례 현황>

(기준일 : 2024.9.24)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비고
경기도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2024. 7.18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7.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 9.12	
전라남도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 5.16	

<교육청 인공지능 조례 현황>

(기준일 : 2024.9.24.)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비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0	
세종특별 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	2024. 6.28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2024. 3.14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2024. 3.14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2024. 2.15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3.12.22	

4. AI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요약 ≫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므로 현시점에서 미래교육 혁신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

제1절 AI 디지털교과서 개요

1. AI 디지털교과서의 등장

○ 1990년대 시작된 인터넷 혁명은 온라인 교육혁명으로 이어짐

-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장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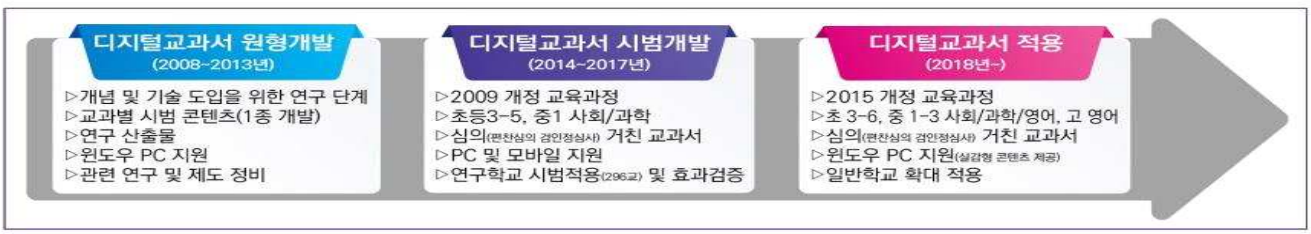
○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다양한 교육용 앱이 개발되었고 협력 학습 및 지식 공유가 활성화

○ 정부는 2008년부터 디지털교과서의 원형을 개발, 시범 개발을 거쳐 20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적용

- '24 기준, 초 3~6학년, 중 1~3학년에서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 활용, 고등학교는 영어회화에 적용

[그림 1] 디지털교과서 도입 경과



자료: 교육부(2023),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안)"

○ 팬데믹 이후,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ChatGPT를 시작으로 초거대 AI(Artificial Intelligence) 혁명이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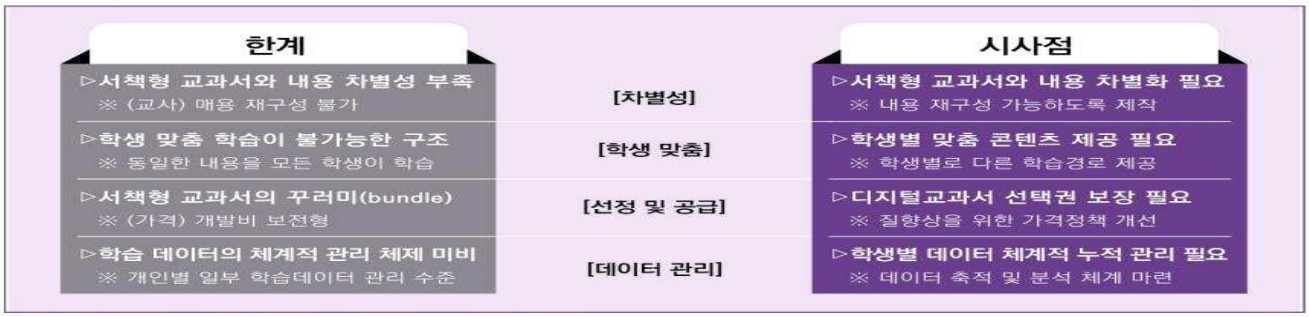
○ WEF(World Economic Forum)는 기술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 시스템이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4.0 제시

- 글로벌 시민역량, 혁신과 창의 역량, 기술 역량, 상호협력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4가지 학습 방법을 제시
- ① 개별화 및 자기 주도 학습 ② 접근 가능학고 포괄적인 학습 ③ 문제 기반 학습과 협력적 학습 ④ 평생학습 및 학습자 주도 학습
- AI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와 위험이 있음

○ 정부는 기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한계 인식,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사교육비 절감 등 AI로 야기될 교육 혁신에 주목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

- (한계점) 기존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과의 차별성 부족, 낮은 활용도

[그림 3] 디지털교과서의 한계와 시사점



자료: 교육부(2023),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안)"

2.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 교육부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

- '24. 8월까지 AI 디지털교과서를 검정 심사하고 '25. 3. 학교 보급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 초등학교는 '27, 중·고등학교는 '28 도입을 완료,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 1~2학년 군과 심미적 감성, 사회·정서 능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과목(도덕, 음악, 미술, 체육)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3. 8.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 공개

- **(3개 원칙)** ①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교육, ② 평등한 학습 기회 보장, ③ 교사의 전문성 존중
- **(개발 방향)**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 학습분석 결과에 따라 보충학습(느린 학습자)과 심화학습(빠른 학습자)을 제공,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설계, 교육 주체가 학습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학습분석을 통한 교육 시스템 개선

○ ‘23. 10.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고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포함

○ ‘24. 4.「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공개

- 2026년까지 선도 교사 34,000명(‘24~’25 각 1.15만, ‘26 1.1만, 학교당 2~3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24년 교사 연수에 3,818억원 사용

○ ‘24. 5.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안)」 발표

- AI 디지털교과서 작동 환경에 맞게 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인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
-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총 600억 원(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
- 교사의 AI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설정, 충전 등 디지털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 1,200명을 양성・배치
- 학교의 IT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하면 조치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인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시도교육(지원)청에 170곳 설치

제2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

1.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

○ AI 디지털교과서는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Learning Analytics),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Human-Centered Design)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에게 가치를 제고

- **(교사)** 학생별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참여형 수업(토론, 협력, 프로젝트 학습 등)을 설계, AI 보조교사의 활동 분석을 참고하여 평가, 학생별 학습성취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성장을 기록
- **(학생)**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습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내재적 학습 동기와 자아 존중감이 향상
- **(학부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녀가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녀의 강점·약점을 파악, 진로 탐색·설계에 다양한 활동 정보 참고하여 자녀에 맞는 정서적 지지·격려 가능

○ WEF는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이 교육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AI로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Automatable tasks), 증강가능한 업무(Augmentable tasks), AI 노출 가능성이 낮고 영향을 받지 않는 업무(Lower potential for exposure and unaffected tasks)로 구분

- AI 기술의 도입으로 교사들의 행정적, 반복적 업무가 줄어들 수 있어, 교사들이 더 가치 있는 교육 활동에 집중
- 교육 자료 개발과 학습 성과 분석 등에서 AI의 지원을 받아 더 효과적이고 개인화된 교육 가능
- 그러나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교육 목표 설정, 체험 학습 등 인간 교사의 고유한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AI로 대체되기 어려움

○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인구감소 대응 및 사교육비 절감도 효과

- 2022년 합계출산율 0.78 최저수준 기록 후 지속 하락 중이며 출산 하락의 약 26%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

※ '23 사교육비 총액: 27.1조 원, 전년 대비 4.5% 증가
'2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3.4만원, 전년 대비 5.8% 증가

○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2.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

○ 2025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초과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

-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부작용이 큰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사용하는 것을 축소, 유보하고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결정에 대한 재논의 필요
-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려면 모든 교과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어 장단점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

○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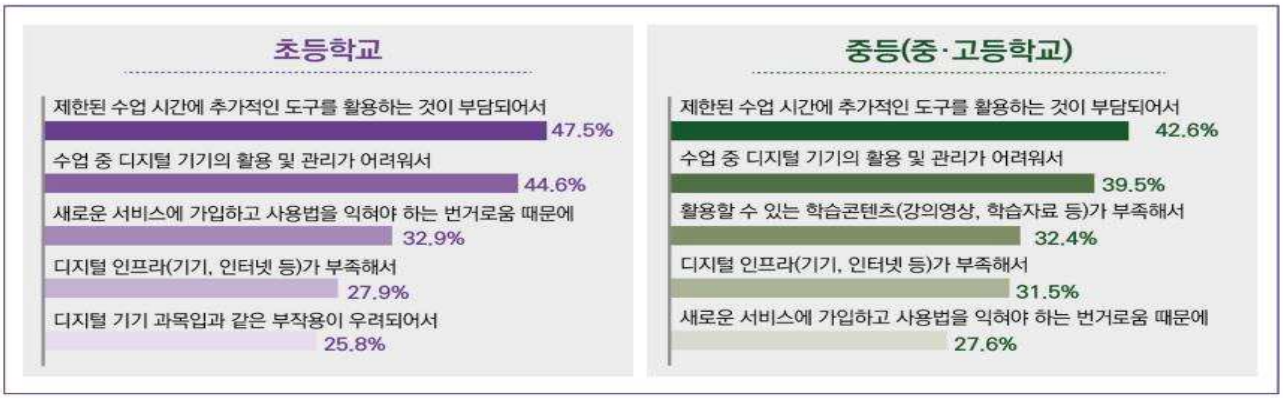
- 교과서 개발 중에 교원 연수로 AI 디지털교과서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라는 비판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관련 개인정보 문제 제기되어 AI 코스웨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함

○ 교사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 활용, 관리 측면에서도 이슈 제기

- 교사가 AI 기반 맞춤 교육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업 적용, 기기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큼

* “들어봤지만 사용해 보지 않았다”(40.6%), “들어본 적 없다(21.3%), “들어봤지만 사용해 보진 않았다”(21.3%)

[그림 6]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3), “AI 기반 맞춤형 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3절 미래 교육을 위한 제언

○ 교육에 적용될 AI에 대한 인식의 합의가 요구

-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교육 주체들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AI 디지털교과서에 적용되는 AI에 대해 혼재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어떠한 범주(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 등)에 있는지 함께 인식하고 논의를 전개 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AI 기술 진화 속도를 동태적 관점에서 고려

-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과거 특정 시점의 AI 교육사례 및 효과가 현재 일반화되기 어려움

○ AI 적용 방식에 대한 다양성 고려

- 교육 분야에서 AI의 적용은 학생 대상 AI(학습 및 평가 지원 도구)와 시스템 대상 AI(교육 관리 지원)를 포함하여 여러 방향으로 발전, AI는 개인 맞춤학습 제공, 학습 몰입도 측정, 학사 행정 자동화 등 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활용됨
- AI의 적용은 목표 분류, 구현 대상과 과목, 효과, 투입비용과 생산성

등에 따라 머신러닝 방식부터 초거대 AI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설계

- 미국의 22개 주 교육부에서 AI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적용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현재 AI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

○ AI 학습효과 측정 고려

- 세분류 기준 AI가 어떻게 적용·활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측정·관리되어야 함
- 펜실베이아 대학의 Hamsa Bastani(2024)의 연구에서는 AI를 잘못 활용할 경우 오히려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결과가 제시
- AI를 활용한 교육은 AI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형태(AI Free)부터 AI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AI Empowered)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통합될 수 있으며 적용 과목과 대상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학습효과가 측정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도입 필요

○ **디지로그(Digilog)[6] 관점이 함께 논의**

- 초중등 교육에 있어 디지털 과몰입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고려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AI를 활용함에 있어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교육 주체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공유

  * 학생들에게 ChatGPT의 도움을 받되,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결론을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마련, ChatGPT로 작성한 숙제를 바탕으로 토론이나 발표 활동 강화하기 등

○ AI 디지털교과서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의의 결과와 이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

-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바 민·관·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개선방안을 모색

6)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로 비트(bit) 0과 1로만 구성된 차가운 디지털에 인간중심, 따뜻함과 같은 아날로그 요소가 융합되는 것을 의미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AI를 활용한 교육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모색

- AI 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을 위한 AI 교육법에 대한 논의 필요
- 관련 법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 법적 근거, AI 디지털교과서의 종류 실태조사, 학습효과 측정, 재원 관리, 격차 해소, AI 리터러시(Literacy), 입시와의 연계, 개인정보보호, 학습데이터 관리,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이슈를 도출해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5.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연구(전북연구원)

‹‹ 연구요약 ››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과 함께, 시·군 연계관광 개발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를 통해 타 시도와의 차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

□ 연구 배경 및 목적

○ 관광객 맞춤 콘텐츠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소멸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 사계절 누구나 편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관광자원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통한 더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따라,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연계관광개발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를 통해 타 시도와의 차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연구 내용

○ 지역연계관광의 개념 및 정책 분석에서는 지역연계관광 개발사업 개념(관련개념 검토, 지역연계 관광개발 필요성, 지역연계 관광개발유형), 지역연계 관광개발 정책동향, 지역연계 관광개발 사례분석 등을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현황분석에서는 관광자원 현황, 빅데이터 기반 관광자원 분석(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관련 키워드, 트위터(RT제외),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시사점 등을 도출함

○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연계관광 추진방향에서는 대응방향 및 발전전략, 공간체계 구상(권역별 공간체계 구상), 추진과제 선정기준 및 과정, 추진과제 선정 등을 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연계관광 추진과제에서는 총 14개 사업을 발굴(K-전통문화체험권역 4개 사업, K-해양레저체험권역 4개 사업, K-산악예술체험권역 6개 사업 제시)

□ 연구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거점 육성'의 3대 목표 12개 과제 구상과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된 해양·생태관광권, 역사·문화관광권, 휴양·레저관광권 3개 권역설정을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연계관광 전략 및 방향 제시

< 권역별 개발사업 >



○ K-전통문화체험권역 : 역사, 문화, 종교자원 등을 활용한 한국 역사문화 일번지

- 개발방향 :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현대적인 삶 속에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지역으로 육성

○ K-해양레저체험권역 : 해양, 레저, 음식자원 등을 활용한 서해안 해양레저 거점

- 개발방향 : 가장 한국적인 해양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해양자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지역으로 육성

○ K-산악예술체험권역 : 산악, 산림, 휴양자원 등을 활용한 동방(東邦)의 아트힐스

- 개발방향 : 가장 한국적인 산악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동부권의 산악을 중심으로 치유, 휴양, 예술, 랜드스케이프 등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관광지역으로 육성

< 권역별 추진과제 세부내용 >

권 역	지 역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K-전통문화 체험권역	전주시	K-뮤지엄밸리 구축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50 일원	2026년 ~ 2033년	40,000
	익산시	금마 전통체험 문화단지 조성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동고도리 일원	2026년 ~ 2031년	30,000
	정읍시	정읍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	정읍시 연지동 343-21 일원	2026년 ~ 2031년	25,000
	완주군	근세 종교문화유산 재조명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일원	2026년 ~ 2030년	50,000
K-해양레저 체험권역	군산시	고군산군도 아트-나이트 아일랜드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원	2026년 ~ 2030년	25,000
	김제시	만경강 힐링복합 레포츠타운 조성	김제시 만경읍 일원	2026년 ~ 2031년	25,000
	부안군	곰소만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 일원	2026년 ~ 2032년	30,000
	고창군	고창 '소금염원' 프로젝트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1번지 일원	2026년 ~ 2031년	25,000
K-산악예술 체험권역	남원시	섬진강 패밀리 아트파크 조성	남원시 가덕리 대강면 일원	2026년 ~ 2030년	20,000
	무주군	금강변 수상&예술 체험벨트 조성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584 일원	2026년 ~ 2030년	20,000
	진안군	용담호 감성예술 관광벨트 조성	진안군 용담호 일원	2026년 ~ 2031년	25,000
	장수군	금강 하늘아래 첫물길 조성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109 일원	2026년 ~ 2032년	30,000
	임실군	옥정호 아트밸리 조성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원	2026년 ~ 2033년	30,000
	순창군	섬진강 아트스테이션 조성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산92-4 일원	2026년 ~ 2031년	20,000

※ 계획에 수록·제시되기 전 실제 정책의 집행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기관·조직 및 실무진과 면담·토론을 수행하고, 발굴·제시된 내용에 따라 지역의 여건 및 환경에 부합하도록 검토의견을 수렴하였고, 실행과제의 검토 및 조정과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책발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성장모델의 근거 제시를 위한 과정을 수행

□ 정책 제언

○ 권역별 연계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리적·입지적 특성, 특화관광자원, 지역 내 관광부문의 인적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계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검토하고, 이들 지자체 간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한 거버넌스 구축 필수
- K-산악예술체험권역의 경우, 현재 각 지역별 협의회에 참여 중이므로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삼도봉생활권협의회(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전북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임순남행복생활권협의회(남원, 임실, 순창),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순창, 곡성, 구례, 담양),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

- 권역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내 기능과 역할 확대, 지역의 특화관광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협의회 구축·운영 등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이후, 신규 관역관광개발사업 발굴

- 광역관광개발사업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관광권역의 개발 필요성에서 시작되어, 자원개발의 중복투자 방지 및 낙후지역의 잠재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총 6,167억 원(국비 2,62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서부내륙권 3개 시·도(전북 10개, 세종 1개, 충남 8개) 시군이 포함됨
- 2000년부터 추진한 12개 권역의 광역관광개발 중 전북특별자치도 권역인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이 2026년 종료되어 새로운 광역관광개발사업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권역별 컨셉과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타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계획 수립 필요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연례적 이 · 전용 사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제47조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 · 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재해발생 등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여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를 다른 사업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그런데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이 · 전용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 소요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021~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 중에서 2회계연도 이상 이 · 전용(감액)이 이루어진 사업의 이 · 전용 규모, 집행 소요 등을 검토한다.

나. 분석의견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 강화 사업,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사업의 예산은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의 증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첫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연구용역, 국제협력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카자흐스탄과의 민간투자관련 국제협력 예산의 집행 부진 등으로 인해 2021회계연도의 경우 집행률이 15.5%를 기록하였으며,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의 30% 이상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2021~2023회계연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예산 현액 대비		
2021	459	-	-	459	71	15.5	15.5	14	374
2022	442	14	△156	300	199	45.1	66.3	24	77
2023	373	24	△136	261	174	46.6	66.7	30	57

주: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3회계연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세목		세부사업 명	세목	
2022	전용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지원	일반 용역비	136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출연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
			일반 수용비	20			
2023	전용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지원	일반 용역비	136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출연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2021회계연도 예산액 4억 5,900만원의 84.5%인 3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각각 1억 5,600만원, 1억 3,600만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의 증가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1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3회계연도 연속으로 베트남, 카자흐스탄과의 민간투자 관련 국제협력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 받은 이후 이를 불용하거나 대부분의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해당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심의·의결한 국회의 취지와 상충되며, 예산안 편성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 둘째,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재정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2023회계연도 중 2022~2023회계연도 연속으로 동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2021~2023회계연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대비		
2021	1,609	143	-	1,752	1,223	76.0	69.8	183	346
2022	1,533	183	△244	1,472	1,260	82.2	85.6	184	28
2023	1,793	184	△87	1,890	1,202	67.0	63.6	150	538

주: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3회계연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세목		세부사업 명	세목	
2022	전용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일반용역비	9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일반용역비	2022년도 국가재정전략회 행사비용 부족분, 재정비전 2050워크숍 개최비용 충당 등
			일반연구비	9			
			정책연구비	11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출연금	134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일반용역비	사회보험 관련 공론조사 비용 부족분 충당
2023	전용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일반용역비	9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일반용역비	2023년도 국가재정전략회 행사비용 부족분 충당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외업무여비	8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	주요국과의 재정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9.8%로, 집행률이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각각 2억 4,400만원, 9,500만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등으로 전용되었다. 특히 동 사업에는 2023년 예산 기준으로 재정법령 및 제도정비 관련 공청회, 재정비전 2050 보고대회, 재정전문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 등을 위해 2억 6,000만원의 일반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회계연도 연속으로 일반용역비가 9,000만원, 9,500만원이 전용되어 일반용역비가 집행소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 셋째,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사업은 국제금융기구, G20 등의 국제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2021~2023회계연도 중 2022~2023회계연도 연속으로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2021~2023회계연도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대비		
2021	1,854	-	-	1,854	1,058	57.1	57.1	-	796
2022	1,738	-	△70	1,668	1,350	77.7	80.9	-	318
2023	1,793	-	△89	1,704	1,519	84.7	89.1	-	185

주: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3회계연도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사업의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세목		세부사업 명	세목	
2022	전용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	국외업무여비	70	ADB연차총회 준비 및 개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ADB 연차총회 준비를 위한 운영예산 충당
2023	전용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	국외업무여비	89	역내금융협력사업	국외업무여비	역내 금융협력 신규 출장소요 등 여비 부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18억 5,400만원 중 10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7.1%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국외업무여비를 각각 7,000만원, 8,9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국외업무여비가 실제 소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 한편, 이들 사업의 경우 2022회계연도 역시 다른 사업으로 전용(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점, 집행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23년 5~8월간 이루어진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 편성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례적 이·전용 사업의 2024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연례적 이·전용		
	2023	2024	2022~2023 이전용 세목	이전용된 세목의 예산액	
				2023	202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373	336	(2022) 일반용역비 △136 (2023) 일반용역비 △136	136	99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1,793	969	(2022) 일반용역비 △95 (2023) 일반용역비 △95	260	296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1,793	2,051	(2022) 국외업무여비 △70 (2023) 국외업무여비 △89	958	1,307

주: 1.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이 2024년도 예산에서 타 사업으로 이관되어 사업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2. 각 사업별로 2022~2023회계연도 연속으로 이·전용(감액)이 이루어진 세목에만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전용(감액)이 이루어졌던 일반용역비가 2024년의 경우 일부 감액되어 편성되었다.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과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사업은 연례적으로 전용(감액)이 이루어졌던 일반용역비와 국외업무여비가 오히려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의 예산은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타 사업의 증액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2024년 예산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 연례적인 이·전용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이들 사업의 집행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황

○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로 구분됨

- **공익활동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으로 봉사(사회활동)의 성격을 지님.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월 29만원 지급)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 등(월 76만원 지급)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으로 구분함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예산현액 1조 5,363억 1,600만원 중 1조 5,363억 1,600만원 중 1조 5,36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300만원을 불용함

[2023회계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계속)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당초	수정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1540016	1540016	-	△3,700	1536316	1536278	14	23	2026370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에 총 1조 5,103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형이 60만 8,000명 대상 9,192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형 85,000명 대상 3,124억 4,500만원, 민간형 일자리 19만명 대상 1,93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산출내역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23년) 1,510,308백만원
ㅇ 공익활동형 : 919,296백만원
· 608천명*(270천원*11개월+180천원)*48%
ㅇ 사회서비스형 : 304,550백만원
· 80천명*(594천원*10개월+1,991천원)*48%
ㅇ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5천명) : 7,895백만원
· 부대경비, 전담인력 등 지원 : 5천명*320천원*5개월*100%
ㅇ 민간형 일자리 (190천명) : 193,612백만원
- 시장형사업단 : 57,672백만원
· 45천명*2,670천원*48%
- 고령자친화기업 : 9,000백만원
· 30개소×300백만원×100%
- 취업알선 : 4,840백만원
· (지자체) 20천명*150천원*48%
· (민간) 68천명*50천원*100%
- 시니어인턴십 : 122,100백만원
·55천명*370천원*6개월*100%
ㅇ 수행기관 인센티브: 2,000백만원
· 200개소×10백만원*100%
ㅇ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73,355백만원
· (시도, 수행기관) 5,300명(2,010천원13개월+2,697천원)*48%
ㅇ 참여형 자원봉사 (48천명) : 9,600백만원
·활동비 : 48천명*25천원*8개월*100%
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 : ('23년) 21,251백만원
③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23년) 8,326백만원
④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운영 : ('23년) 131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 **노인일자리 사업 중도포기율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 요구**

- 2020 ~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지원예산이 56.2%, 목표인원은 45.2% 증가하며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함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원예산이 2020년 1,395억원에서 2024년 5,896억원으로 4배 가량 확대되었고, 목표인원도 공익형 일자리 20.4%, 민간형 일자리 73.4%가 확대됨

[2020~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가비율(%)
계	지원예산	1,210,669	1,221,209	1,336,669	1,425,353	1,891,577	56.2
	목표인원	710,000	805,000	845,000	883,000	1,030,000	45.2
	참여인원	808,009	914,655	971,475	1,015,683	925,336	14.5
	참여율(%)	113.8	113.6	115.0	115.0	89.8	

○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었고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율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중도 포기율은 2020년 10.5% 대비 2023년 11.1%로 증가하였음, 2023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중도 포기율은 공익형 12.6%, 사회서비스형 10.0%, 민간형 5.9% 순으로 나타남
- 2020~2023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 중도포기 현황에 따르면 매년 모든 일자리 유형의 중도포기의 1순위는 '건강악화'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다 2022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은 총 3,086건으로 전년 대비 86.1% 증가**함. 사고발생 유형은 골절(57.3%)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일자리로 인한 사망자도 51명으로 집계됨

- 또한, 노인일자리 유형별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전체 사고의 평균 87%는 '공익활동형'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골절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18~2023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고 건수	사고발생 유형											
		골절	사망	열상	염좌	인대 손상	자상	절상	찰과상	타박상	혈관 질환	화상	기타
2018	964	494	1	13	80	4	1	12	67	107	0	21	164
2019	1,453	743	7	17	91	6	3	20	89	143	0	29	305
2020	1,350	800	10	56	81	43	38	15	97	170	23	13	4
2021	1,762	1,029	9	36	113	82	31	14	77	230	17	18	106
2022	1,658	970	6	52	77	60	26	15	91	203	9	25	124
2023	3,086	1,850	18	100	165	126	48	35	161	422	26	34	101
합계	10,273	5,886	51	274	607	321	147	111	582	1,275	75	140	804
비율	100	57.3	0.5	2.7	5.9	3.1	1.4	1.1	5.7	12.4	0.7	1.4	7.8

자료: 보건복지부

○ 상기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의 증가 추세에 비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추이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임. 현재 보건복지부는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교육 실시, 혹한기·혹서기 활동 탄력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안전사고 건수가 86.1% 증가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 급증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중도 포기율 및 안전사고 발생 추이와 사유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인 안전대책 수립 등 사업의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노인일자리 선발기준표 상 '노인활동역량' 지표 개선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가자격 기준에 따라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음. 신청자의 사업참여 적격성(자격정보,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등) 및 개별상담을 진행 후 참여자 확정

- 공익활동형 참여자 선발기준표 상 '활동역량' 지표는 지표내용 및 평가방식이 단순하여 실질적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 보완 및 참여경력 가점 부여 시 최초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추가 가점을 부여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필요

○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상 노인의 활동역량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표를 보완**하여, 노인일자리 **중도포기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규참여자 가점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현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표1> 연도별·일자리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건)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4년 6월
합계	**10,358**	1,448	1,350	1,762	1,658	**3,086**	1,054
공익활동	**8,884**	1,235	1,181	1,560	1,400	**2,673**	835
사회서비스형	**934**	88	78	141	191	**258**	178
시장형	**498**	120	82	56	58	**143**	39
고령자친화기업	**4**	4	0	0	0	**0**	0
취업알선형	**1**	0	0	0	1	**0**	0
시니어인턴십	**34**	1	9	2	8	**12**	2

<표2> 사고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단위:건)

연도	합계	골절	염좌	찰과상	타박상	사망	기타
합계	**10,363**	**6,021**	**586**	**571**	**1,285**	**52**	**1,848**
2019	1,453	743	91	89	143	7	380
2020	1,350	800	81	97	170	10	192
2021	1,762	1,029	113	77	230	9	304
2022	1,658	970	77	91	203	6	311
2023	3,086	1,850	165	161	422	18	470
2024	1,054	629	59	56	117	2	191

☞ **2023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총 3,086건으로 **2022년에 비해 1,428건(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3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으며(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 참여기관 보고서 미제출 등 안전사고 대응이 부진함이 지적됨

<표3> 지역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건)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4년 6월
합계	10,358	1,448	1,350	1,762	1,658	3,086	1,054
서울	1,282	221	156	213	167	377	148
부산	928	119	136	156	164	254	99
대구	540	68	63	94	106	159	50
인천	892	107	99	127	182	262	115
광주	356	37	41	83	61	95	39
대전	244	51	36	38	26	72	21
울산	220	37	29	51	31	47	25
세종	45	3	10	6	4	16	6
경기	1,471	223	162	264	231	444	147
강원	800	124	103	129	114	243	87
충북	440	56	54	81	79	137	33
충남	391	58	47	64	57	131	34
전북	593	86	87	86	83	196	55
전남	644	80	110	117	92	200	45
경북	595	88	87	93	114	170	43
경남	811	79	117	133	132	252	98
제주	106	11	13	27	15	31	9

<출처: 서미화 국회의원>

☞ 지난 5년간(2019~'24.06.) 지역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 1,471건 (14.2%)으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서울 1,282건(12.4%), ▲부산 928건(9.0%), ▲인천 892건(8.6%), ▲경남 811건(7.8%) 순으로 나타남. **▲전북 593건(5.7%)으로 전국 9번째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았으나,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비 안전사고 발생률('23년 0.27%, '22년 0.12%)을 고려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책이 필요함**

※ '23년 전북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2,543명 ('22년 69,380명)

3. 발효식품 관련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은 김치·전통주 등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171억 8,600만원 중 171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이월하고 300만원을 불용함

[2023회계연도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통발효 식품육성	17,246	-	△60	17,186	17,124	59	3	18,476
김치원료공급 단지 구축	5,800	-	-	5,800	5,800	-	-	8,860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1,450	-	-	1,450	1,450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및 절임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개소당 290억원의 총사업비(국비 116억원) 규모로 총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및 절임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대상) 충북 괴산군,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 (지원내용) 저온저장(예냉 포함), 가공(전처리)시설 및 염수재활용 시설 등의 설계비, 부지 조성비, 시설 건축 및 생산 설비·장비 등 구축 비용
- (사업기간) 사업별 총 사업기간 4년(괴산·해남: '22~'25, 고창: '24~'27)
  * (1년차·2년차) 기본 및 실시설계 → (3년차·4년차) 부지조성, 시설건축, 장비 설치, 시범가동 등
- (사업규모) 개소당 총 사업비 290억원(국비 40%, 지방비 60%)

○ **'발효식초 산업플랫폼 구축사업'**은 발효식초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규모로 전북 고창군에 발효식초산업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업임

[발효식초산업플랫폼 구축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발효식초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지원하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시장 확대
ㅇ (지원대상) 전북 고창군
ㅇ (지원내용) 발효식초 공유 가공공간 조성, 생산·시험연구장비 구축 비용 등
ㅇ (사업기간) (당초) 2022~2023(2년), (변경) 2022~2024(3년)
ㅇ (사업규모) 개소당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 교부된 예산 11억 6,000만원 중 11억 3,800만원(98.1%)이 이월되었고, 2023년도에도 58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2023년말 기준 예산현액의 13.6%만이 실집행된 상황임

○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 교부된 예산 전액(5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3년도에도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2023년말 기준 예산현액의 13.0%만이 집행된 상황**임

○ 발효식초산업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2023년에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 공모 진행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1월에 착공함. 이와 같은 일정 지연으로 본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지연된 2024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상황임

[2023년도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및 발효식초산업플랫폼 구축사업보조금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시행자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집행률 (B/A)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충북 괴산군 (2차년도)	2,900	580	3,480	648	2,832	18.6
	전남 해남군 (2차년도)	2,900	558	3,458	296	3,162	8.6
	합계	5,800	1,138	6,938	944	5,994	13.6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전북 고창군 (2차년도)	1,450	550	2,000	261	1739	1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발효식초산업플랫폼 구축사업 당초 대비 변경계획 현황]

구 분	당초계획 (사업최초연도)	변경계획
계획수립	2022.3	2023.1
기본·실시설계	2022.8.~9.	2023.7.~12.
공사	2022.10~2023.10	2024.1~12.
단지운영개시	2023.12.	2024.12

○ 따라서, <u>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과 발효식초산업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u>하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됨. 또한, 사업시행 지자체는 현재 계획에 따라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고창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개요

연도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000	1,450	-	1,550	
2023	시설구축	· 플랫폼 건축 공사	1,800	870	-	930	
	장비구입	· 플랫폼 공정 장비 구입	1,200	580	-	620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2,000)
- 사업기간 : '21년(사업 최초연도) - '24년 12월(준공 예정)
- 사업장소 :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323-46) ※ <u>'23년 사업부지 변경</u>
- 사업내용 : 발효식초 공유 가공공간 조성, 생산·시험연구장비 구축, 연구개발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4. 청소년비즈쿨 사업의 참여 제고 등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청소년비즈쿨 사업은 초·중·고 청소년의 맞춤형 창업교육과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각급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창업 교육과정을 갖춘 청소년비즈쿨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창업저변확대의 내내역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63억 9,500만원 전액을 교부·집행하였다.

[2023회계연도 창업저변확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창업저변확대	24,059	24,059	24,059	-	-	23,018
혁신창업가양성	7,275	7,275	7,275	-	-	6,645
청소년비즈쿨	6,395	6,395	6,395	-	-	6,64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청소년비즈쿨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이 일선 학교(초·중·고 및 영재학교, 대안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와 운영 협약을 맺고 해당 학교를 비즈쿨로 지정하면,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동아리, 체험 프로그램 교내 개최, 교재활용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비즈쿨은 총 423개소(거점형 16개, 일반형 322개, 체험형 85개)가 운영되었다.

○ 청소년비즈쿨은 크게 거점형, 일반형 및 체험형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일선 학교 중에서 선정하는 거점형과 일반형이다. 거점형 비즈쿨이 일반형 비즈쿨에 비해 다른 점을 정리하면, 거점형 비즈쿨은 일반형 비즈쿨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 수준이 보다 높고,

자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외에도 지역 내 다른 일반형 비즈쿨과의 협업 프로그램이나 교사 간담회 주최 등 지역 내 학교 창업문화 확산 선도의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거점형 비즈쿨은 시·도당 1개소가 선정되며, 일반형(2023년 기준 연 평균 990만원)보다 지원 받는 예산의 규모(2023년 기준 연 평균 6,000만원)도 크다.

[거점형 비즈쿨과 일반형 비즈쿨의 비교(2023년 기준)]

구분	거점형 비즈쿨	일반형 비즈쿨
운영요건	전교생의 누적 10% 이상 교재활용 교육 연 4회 이상의 체험활동 운영 연 2회 이상의 체험활동 참여	
창업동아리 최소요건	캐시클래스형 2개 이상 기술/혁신형 2개 이상	형태 구분 없이 2개 이상
협업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필수 운영	운영 및 참여 의무 없음[5]
운영 자격요건	2년 이상 비즈쿨 운영이력 필요[6]	기존 운영이력 불필요
학교당 지원액 (23년 기준)	연 평균 6,000만원	연 평균 990만원
개소수(23년 기준)	16개	322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체험형 비즈쿨은 거점형·일반형 비즈쿨과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소속 청소년들이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체험형 비즈쿨은 2023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85개교(센터)가 참여하였다.

나. 분석의견

○ 청소년비즈쿨 사업은 해마다 거점형·일반형 비즈쿨의 참여 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많은 학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 등 일선 학교의 신청·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청소년비즈쿨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각급 학교(이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함) 별로 신청을 받아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선정 실적을 보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다양한 신청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점형과 일반형 유형을 살펴보면, 2019년(2020년까지 지원)에는 거점형 15개교, 일반형 480개교 등 총 495개교가 사업에 참여했으나, 2021년(2022년까지 지원)에는 거점형 26개교, 일반형 399개교 등 총 425개교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거점형 16개교, 일반형 322개교(중도 포기 제외) 등 총 338개교로 감소하여 해마다 참여 학교 수가 줄어들었다.

[2019~2024년도 청소년비즈쿨 운영[1] 현황]

(단위: 개교)

연도	거점형	일반형	소계	체험형 (23년 신규)	계
2019	15	480	495	-	495
2020	15	472	487	-	487
2021	28	396	424	-	424
2022	26	399	425	-	425
2023	16	322[2]	338	85	423
2024(예정)	11	209	220	203	423

주: 1) (운영기간) 2018년까지는 1년, 2019~2020년은 1+1년(평가를 통해 1년 연장), 2021년부터는 2+1년(평가를 통해 1년 연장)임
2) 선정학교 323개교 중 협약을 중도에 포기한 1개교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거점형과 일반형 비즈쿨은 체험형 비즈쿨과 달리,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유형으로서, 교재활용 교육과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운영, 지역사회 협업 프로그램 등 비즈쿨 프로그램을 모두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원 유형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목적이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창업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업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점형과 일반형 비즈쿨의 참여 학교 수 감소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일부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거점형·일반형 및 체험형 프로그램의 역할]

구 분	세부 내용
거점형·일반형	소속 학생들에게 교재활용 교육, 동아리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비즈쿨캠프,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기관
체험형	거점형·일반형 비즈쿨과 전체 청소년비즈쿨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

자료: 창업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본 사업은 만족도 조사 결과 교원 등 사업담당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청소년의 만족도는 3.90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비즈쿨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2023년]

(단위: 점)

구분	학생·청소년	교원(사업담당자)
만족도	3.90	4.41
조사대상	거점형·일반형 청소년 3,300명 중 1,342명 대상 조사	거점형·일반형 담당교사 676명 중 513명 대상 조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본 사업은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학생 수 분포에 비해 비즈쿨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있었다. 이들 중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전남·제주 지역은 학생 수는 전국의 8.1%를 차지하지만 비즈쿨의 비중은 5.0%에 불과하였으며, 제주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 인 거점형 비즈쿨이 없었다. 강원도 지역 역시 학생 수 비중(2.7%)에 비해 비즈쿨(0.9%)이 현저히 적게 운영되고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는 해당 지역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비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창업 및 경제교육 체험시설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 차원의 창업교육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즈쿨과 같은 공공형 창업 체험시설의 확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 수도권 지역 중 비즈쿨이 과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비즈쿨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신청 실적 제고 및 지역 밀착교육 강화 등 확충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청소년비즈쿨 및 학생 수 지역별 분포]

(단위: 개교, 명, %, %p)

지역명	청소년비즈쿨 선정학교 수				학생 수		증감 (A-B)
	거점형	일반형	계[1)]	비중(A)	학생수	비중(B)	
서울	1	32	33	9.73	784,871	15.07	△5.33
경기	2	75	77	22.71	1,480,690	28.43	△5.71
인천	1	12	14	3.83	306,771	5.89	△2.05
강원	0	3	3	0.88	142,979	2.74	△1.86
대전세종	1	18	19	5.60	213,490	4.10	1.51
충남	1	18	19	5.60	232,792	4.47	1.14
충북	2	19	21	6.19	163,258	3.13	3.06
광주전남제주	1	16	17	5.01	423,651	8.13	△3.12
전북	1	11	12	3.54	183,616	3.52	0.01
대구경북	3	49	52	15.34	490,210	9.41	5.93
부산	1	22	23	6.78	297,085	5.70	1.08
울산	1	5	6	1.77	127,872	2.45	△0.68
경남	1	43	44	12.98	361,744	6.94	6.03
합 계	16	323	339	100.00	5,209,029	100.00	-

주: 1) 체험형 제외, 거점형과 일반형만을 합한 수치임
자료: (청소년비즈쿨 선정학교 수)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학생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를 바탕으로 재작성

5.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이용권 사용에 필요한 결제 수단 다양화 검토 필요 등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동 사업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동 사업 계획 현액 852억 3,200만원 중 852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3회계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2024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5,232	85,232	-	-	85,232	85,220	-	12	120,344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73,096	73,096	-	-	73,096	73,096	-	-	100,799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11,633	11,633	-	-	11,633	11,633	-	-	18,99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만 5세~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월 95,000원의 스포츠시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만 19세~64세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월 95,000원의 스포츠시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생활체육참여 확대와 건강증진	
지원대상	만 5세~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19세~64세 장애인
지원내용	월 9.5만원 / 연 12개월 수강료 지원	
2023년도 지원인원	105,101명	20,006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 첫째, 현재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에 필요한 결제 수단이 OO카드 1개사 밖에 없어 이용권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포함. 이하 같음)의 운영방식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동 사업 운영사인 OO카드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OO카드에 매월 95,000원이 적립되고,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하는 가맹 체육시설(태권도, 골프, 헬스, 발레, 테니스, 축구 등 29종)에서 결제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동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결제 수단인 OO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유·청소년 및 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도움 등이 없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 동 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동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도 동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미사용 인원이 매년 10%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의 미사용 비율이 높은 점을 보면, 카드발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으로 인해 사용을 포기하는 인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선발인원 및 실제 사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발인원 (A)	실 사용인원 (B)	미사용 인원 (A-B) (비율)	선발인원 (A)	실 사용인원 (B)	미사용 인원 (A-B) (비율)
2019	57,122	49,393	7,729 (13.5)	2,310	1,541	769 (33.3)
2020	63,468	51,496	11,972 (18.8)	3,289	1,756	1,533 (46.6)
2021	71,089	60,804	10,285 (14.5)	6,223	3,776	2,447 (39.3)
2022	83,313	72,778	10,535 (12.6)	11,259	8,776	2,483 (22.1)
2023	105,101	92,028	13,073 (12.4)	20,006	15,617	4,389 (21.9)

주: 0안의 숫자는 선발인원에 대한 미사용 인원의 비율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 사업의 결제사가 OO카드사인 이유에 대하여 동 사업이 최초 시작된 2011년 결제사 선정 당시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OO카드사가 선정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과 OO카드사와의 결제 및 정산 연계 기능이 구축됨에 따라 OO카드사와의 계약만료 이후 4번의 공모에서 응찰 사업자가 없어 OO카드사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결제사 공모 및 선정 현황]

계약기간	카드사	사업자 선정 방법
2011.3 ~ 2014.12	OO카드	공모
2015.1 ~ 2015.12		공모 후 무응찰로 연장
2016.1 ~ 2016.12		공모 후 무응찰로 연장
2017.1 ~ 2019.12		공모 후 무응찰로 연장
2019.9 ~ 2024.12		공모 후 무응찰로 연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결제사 선정 관련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계약을 불허하고 단독계약만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의 결제사로 선정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과의 결제 및 정산 연계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결제사인 OO카드사 외 다른 사업자의 단독참여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동 사업의 결제사에 대하여 1개의 사업자와만 계약을 추진하였고, 복수의 사업자(다른 카드, 각종 페이, 선불 또는 지역 카드 등의 사업자)와의 계약을 추진하는 시도도 없었던 상황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선발인원의 미사용 인원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실집행률 또한 다소 부진한점 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의 동 사업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사 모집 시 공동계약을 통해 여러 결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O카드사 외에 다른 결제 수단 사업자와의 협의 및 결제사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통하여 동 사업의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둘째,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 장애인이용권 대상자가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에서는 이용권의 사용이 불가한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수가 적어 장애인대상자가 동 사업을 이용하기 다소 불편하므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의 경우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에서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하는 가맹 체육시설(태권도, 골프, 헬스, 발레, 테니스, 축구 등 29종)에서 결제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수(전국 4,469개)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수(전국 18,324개)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는 동 사업을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한 상황이다.

○ 더욱이 지역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총 4,469개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중 1,775개(39.7%)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은 평균 100개~200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자는 자택 인근에서 원하는 종목(태권도, 볼링, 배드민턴 등)을 수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별 가맹점 수 현황(2023년 말 기준)]

(단위: 개소)

시·도		가맹점 수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도권	서울	2,419	606
	경기	4,586	987
	인천	1,072	182
	계	8,077	1,775
부산		1,234	298
대구		972	277
광주		806	190
대전		569	133
울산		426	100
강원		681	146
충북		571	135
충남		687	245
전북		795	222
전남		651	204
경북		974	248
경남		1,420	363
제주		299	95
세종		162	38
총 합		18,324	4,46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하여 지역 체육시설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최초로 실시된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5년 동안 체결된 누적 가맹점 수가 4,469개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가 큰 불편 없이 이용권을 사용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에서도 무리 없이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에 대하여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에서도 동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회